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2022. 1.



농지은행! 청년의 꿈을 열고, 노년의 행복을 담다!

농 지 은 행 처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주요 개정 내역

연도별	주요변경 사항	내 용												
2011년	약정철회 규정 신설	○ 약정체결일로부터 2회차 월지급금 지급 결정일 까지 약정철회 규정 신설												
2012년	근저당권설 정등기 법무 사보수료 감 액(60%)적용	○ 담보농지 근저당권설정 법무사보수료 30%→60%감액 * 대한법무사협회와의 법무사보수료 협약체결 (‘11.11.10)사항 반영												
	월지급금 지급 약정체결 기준일 변경 반영	○ 농지연금 지급범위 약정체결 기준일 확대 (당초 5일 → 변경 10일)를 통한 연금수령기간 단축으로 가입자 연금수혜 확대												
2013년	월지급금 지급상한액 기준 문구 명확화	○ 월지급금 지급상한액을 월 3백만원 수준에서 “수준” 문구 삭제												
	가입비 선납 및 중도 납부 제도 도입	○ 가입비 선납 및 중도 납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												
2014년	감정평가 도입 이자율 인하 가입비 폐지	○ 담보농지 가치 평가방법 감정평가방법도입 ○ 대출이자율 인하(4%→3%) ○ 가입비 폐지에 따른 관련내용 개정												
	지급방식별 가입연령 제한	○ 기간정액형 가입연령 제한(기대여명 감안) <table> <tr> <th>기간</th> <th>현행</th> <th>변경</th> </tr> <tr> <td>5년형</td> <td>만65세이상 - 만90세까지</td> <td>78세이상</td> </tr> <tr> <td>10년형</td> <td>만65세이상 - 만80세까지</td> <td>73세이상</td> </tr> <tr> <td>15년형</td> <td>만65세이상 - 만72세까지</td> <td>68세이상</td> </tr> </table>	기간	현행	변경	5년형	만65세이상 - 만90세까지	78세이상	10년형	만65세이상 - 만80세까지	73세이상	15년형	만65세이상 - 만72세까지	68세이상
	기간	현행	변경											
	5년형	만65세이상 - 만90세까지	78세이상											
	10년형	만65세이상 - 만80세까지	73세이상											
15년형	만65세이상 - 만72세까지	68세이상												
가입연령 요건 완화	○ 부부 모두 만 65세이상인 농업인에서 농지 소유자 만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개정													
연금채무 분할상환 도입	○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연금약정 해지시 채무 분할상환 선택 가능 하도록 개정													
농지연금 지원신청서류 간소화	○ 지원신청시 토지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													

연도별	주요변경 사항	내 용
2015년	감정평가방식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	○ 감정평가방식 담보농지 평가율 70%에서 80%로 상향조정
	농지연금 심의회 세분화	○ 공시지가대비 감정평가금액 1.8배 초과 ~ 3.0배 이하 구간 지역본부 심의 도입 * 1.8배 초과 ~ 3.0배 이하 : 지역본부심의, 3.0배 초과 : 본사심의
	대출이자율 인하 및 변동 금리 도입	○ 대출이자율을 3%에서 고정금리(2.5%) 또는 변동금리(매 6개월)로 변경 ○ 신청인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
	농지소유규모 요건 폐지	○ 소유농지 3만 m ² 이하 요건 폐지
2016년	대출이자율 (고정금리)인하	○ 대출이자율(고정금리)을 2.5%에서 2%로 변경
	지원약정 변경 사유 및 절차 추가	○ 환지에 의한 평정가격 증감 필지, 지적재조사에 의한 농지가격 증감 필지, 불가항력의 사유로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의 면적은 약정변경 절차에 의하여 처리
2017년	전후후박형 도입	○ 종신형에 월지급금을 최초 지급일부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지급유형 도입
	일시인출형 도입	○ 종신형에 농지연금의 총 대출한도액 범위내 (30%이내)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지급유형 도입
	경영이양형 도입	○ 기간형에 연금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영이양형 지급유형 도입
	배우자 승계 연령 완화	○ 배우자의 승계연령을 완화(65세→60세)하되, 배우자 승계 조건으로의 가입여부는 가입자가 약정시 배우자의 동의를 거쳐 선택

연도별	주요변경 사항	내 용
2017년	소액담보 설정농지 가입허용	○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소액 담보설정(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농 지의 농지연금 가입 허용
	담보농지 개별필지 해지 약정변경 허용	○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 중 일부 필지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담보농지 개별필지 해지를 위한 약정변경 허용
2018년	종신행 지급금액 조정	○ 종신행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한도액 (월지급금 3백만원) 범위내에서 동일하게 적용
2019년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	○ 감정평가방식 담보농지 평가율 80%에서 90%로 상향조정
	기대이율 및 사망확률 조정	○ 기대이율 하향 조정(4% → 3.65%) ○ 사망확률 2016년 완전생명표 적용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 사후관리 자료제공 (주민등록전산자료(행정안 전부) 매월, 지적전산자료(국토교통부) 년2회 제공)
	개별공시지가 평가방법 개선	○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는 분할·합병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담보농지 중 제한내용 추가	○ 담보농지 보유기간 및 담보농지와 주소지와의 거리 제한
2020년	압류방지통장 출시	○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농지연금지킴이통장) 출시 - 민사집행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내 압류방지
2022년	우대상품 도입	○ 저소득층, 장기영농인 대상 월지급금을 추가 지 급하는 우대형상품 도입
	중도상환 허용	○ 약정변동 없이 농지연금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상환 허용
	상품변경 허용	○ 가입 후 3년 이내 1회에 한해 지급방식 변경 허용
	기초변수 갱신	○ '20년 완전생명표 적용
	상품명칭 변경	○ 일시인출형 → 수시인출형

목 차

제 I 장. 사업개요	1
1. 목적	1
2. 근거법령	1
3. 추진절차	2
제II장. 사업시행요령	3
1. 자격 및 요건	3
2. 상담	6
3. 신청서 접수	7
4. 대상자 결정	8
5. 감정평가 실시	9
6. 약정체결	11
7. 월지급금 지급 등	14
제III장. 사후관리	16
1. 약정변경	16
2. 사후관리	19
3. 월지급금 지급정지	23
제IV장. 행정사항	27
덧붙임) 별지서식	29

제 I 장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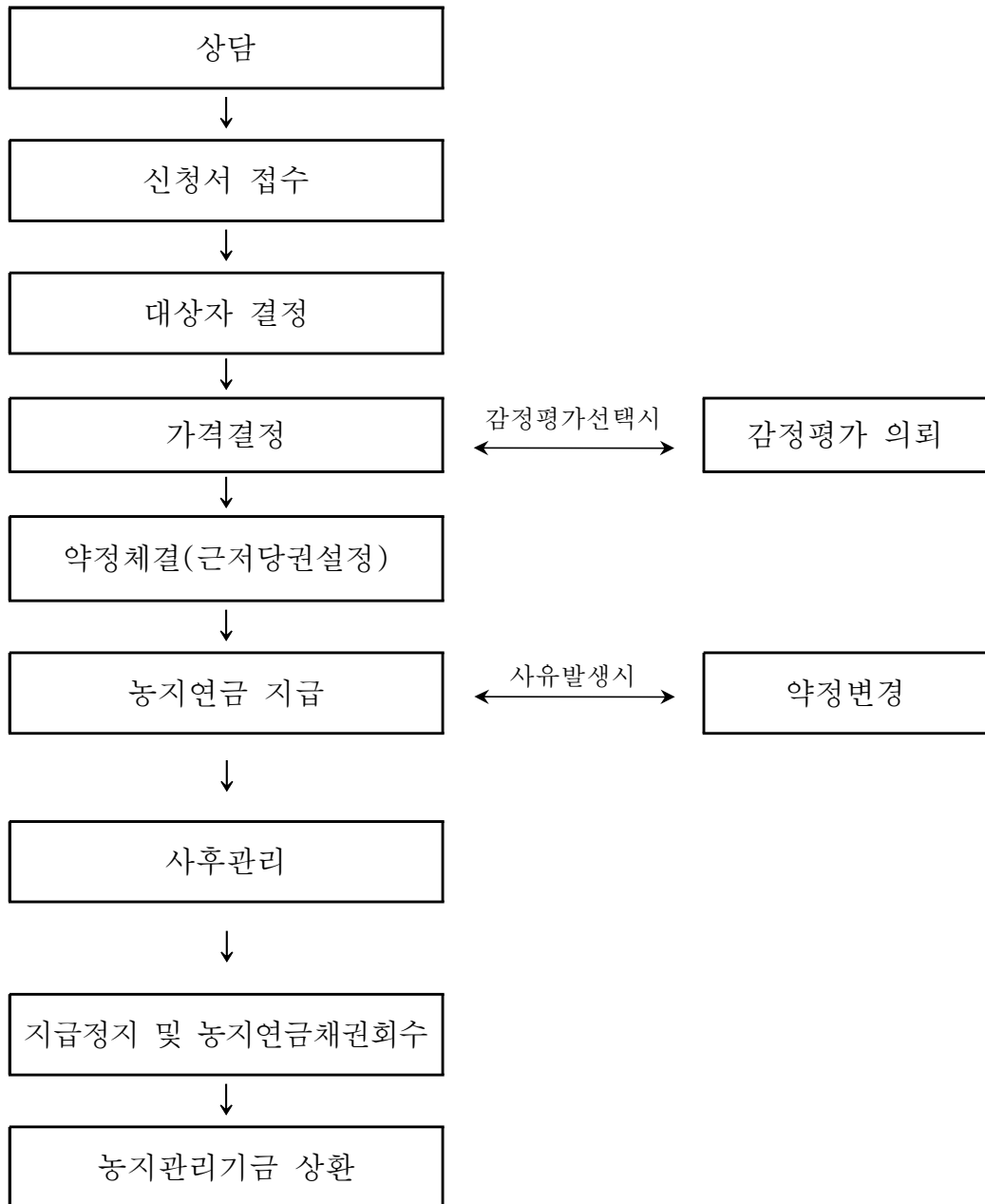
1. 목 적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

2.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사업),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26조의6(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 자금 신청 및 지원기준), 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제19조의11(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제19조의12(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19조의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제19조의14(농지연금채권의 행사범위), 제19조의15(농지연금 입금금액), 제19조의16(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제19조의8(노후생활안정 자금의 신청), 제19조의9(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제19조의10(담보 농지가격의 평가방법), 제19조의11(배우자의 범위)

3. 추진절차



제II장. 사업시행요령

1. 자격 및 요건

가. 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1) 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신 청인이 만 65세 이상(2022년의 경우 1957.12.31이전 출생자)일 것

단,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2022년의 경우 1962.12.31이전 출생자)의 경우 배우자 승계 조건으로의 가입여부는 가입자가 약정 시 배우자의 동의를 거쳐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승계* 가입

* 농지연금 약정신청당시 배우자 비승계로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인 경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하지 않는 것을 ‘비승계’라 함

○ “배우자”는 신청인과 법률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

* “배우자”는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당시 승계조건으로 가입하고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

2) 영농경력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나. 대상농지(담보농지)

1)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농지는 지목변경 후 신청가능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의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환매받은 농지는 사업 지원 전 보유기간과 환매 이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공익사업 수용 등으로 인해 농지를 대체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 종전 농지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며, 이 경우 ①취득세 감면확인서 ②수용사실확인서 ③수용농지의 등기부등본을 전부 제출받아 종전 농지의 보유기간 및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확인 (지자체, 사업시행기관 등에서 발급)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경·공매(경·공매로 취득 후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된 농지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④ 경영이양형의 경우 공사가 맞춤형농지지원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 공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2) 제외 농지

- 가압류,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 해당 농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농지에 제한물권(선순위채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채권액¹⁾이 담보농지 가격²⁾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는 담보가능
 - * 채권액¹⁾ :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 * 담보농지가격²⁾ : 가입(약정체결)당시 농지가격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 방식 모두 평가율 100% 적용하여 필지별 적용
 - * 단, 국가기반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영농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가능
- 불법건축물 및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 * 분묘, 농가주택, 농로사용 목적의 콘크리트 포장 등 영농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해당면적을 제외하고 농지면적 산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 *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부부중 1인이 전체면적으로만 신청 가능(각자 지분 신청 불가)
- 농지연금 신청 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
 - * 각종 개발계획의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예정지역의 농지는 지원대상 농지에 포함시키되 연금수급기간 중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채권회수가 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가능

다.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및 평가율

- 월지급금 산출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①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②감정평가 가격에 평가율과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율 : ① 100%, ② 90%)
- 담보농지 가격평가는 필지별로 산정하되 산출가액의 10원미만은 절사
* 과수목과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하여는 농지가격 평가대상에서 제외

2)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격결정

- 일사편리(KRAS)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개별공시지가 자료로 확인. 다만, 인터넷자료가 공개되지 않거나 데이터오류 등의 경우는 「부동산종합증명서」에 기재된 m²당 가격으로 확인
-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누락 등으로 결정·공시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의뢰하여 당해 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평가. 다만, 분할·합병 등으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의 농지에 대하여는 분할·합병 전 각각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
- 위의 방법으로 확인한 가격 범위 내에서 공사와 농지소유자간 필지별로 합의된 금액

3)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결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별 감정평가금액에 평가율(90%)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공사와 농지소유자간에 필지별로 합의된 금액

4)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담보농지의 가격결정

- 이미 제한물권(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담보농지의 경우에는 담보농지 가격²⁾에서 해당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담보농지 가격 산출³⁾(단, 수시인출형으로 가입하는 경우로서 수시인출금으로 선순위채권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차감하지 않고 담보농지 가격을 산출)

* 선순위채권* : 채권액¹⁾이 담보농지 가격²⁾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채권액¹⁾ :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 담보농지 가격²⁾ : 가입(약정체결)당시 농지가격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방식 모두 평가율 100%적용하며 필지별 적용

* 담보농지 가격 산정³⁾ : 1)의 방법으로 산출

라. 월지급금 지급방식 및 지급대상자

1) 지급방식 및 가입가능 연령

① 종신행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종신행 농지연금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액형 농지연금 상한선(월지급금 3백만원) 범위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

○ 종신통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유형

- 우대형 : 종신통액형 가입자 중 저소득, 장기영농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유형

· 저소득(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제

①항제1호의 “생계급여수급자”는 종신통액형 월지급금의 10%를 추가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급여수급자)로 확인

· 장기영농인 : 영농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는 종신통액형 월지급금의 5% 추가 지급

* 장기영농인 영농경력은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확인(별지 제3호서식 영농경력사실

확인서 제외)

- 전후후박(前厚後薄)형 : 월지급금을 최초 지급일부터 10년간은 정액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정액정보다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 종신휘 농지연금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수시인출금 : 대출한도액의 30%이내에서 백만원 단위로 수시 인출
 - 신청방법 : 가입 시 또는 인출희망 해당월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
 - 지급시기 :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가입시 신청) 또는 신청월 익월 월지급금 지급일
- ※ 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을 신청접수 시 안내
 - 채권산정방법 : 수시인출금은 인출(지급)월의 월지급금에 가산하여 산정
 - 선순위채권 상환 및 말소 : 수시인출금으로 선순위채권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만 해당)을 전부 상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금지급 시 선순위채권을 상환 및 말소시켜 담보농지에 대한 공사의 근저당권 설정은 1순위로 하여야 함(선순위채권 상환 및 저당권 말소는 공사가 직접 수행하고,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며, 선순위채권의 저당권 말소를 확인, 관련서류 보관)

② 기간형 :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기간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 연금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유형
 - 담보농지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¹⁾을 통해 공사에 매도하면서 연금채무를 상계처리하고 매매대금 잔금을 정산 처리함(단, 담보농지는 약정(연금지급)기간 종료시에만 공사에 매도 가능하며,

공사는 매입시점 기준으로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규정에 따라 대상조건 및 매입가격 등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매입)

- * 맞춤형농지지원사업¹⁾ : 공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 공사에 담보농지 매매도 시 가입(약정)기간과 상관없이 위약금 (농지가격²⁾의 2%) 부과
- * 농지가격²⁾ : 가입(약정체결)당시 농지가격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방식 모두 평가율 100%적용
- 월지급금 산출 시 기대이율로 농지가격상승률을 적용하고 생명표·위험부담금은 적용하지 않음

<지급방식별 가입가능 연령>

지급방식	종신형	기간형			
		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		
			5년	10년	15년
가입연령	만 65세 이상		만 78세 이상	만 73세 이상	만 68세 이상

2) 지급대상자

- ①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② ①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
 - 담보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한 배우자는 제외
 - * “농지연금채무”는 농지연금 지원신청자가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지는 채무(월지급금, 위험부담금 및 이자 등의 합계)와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위약금(연체이자 미부과)의 합계를 말함
 - ③ ①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
- ※ “배우자”는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만60세 이상으로 가입당시 승계조건으로 가입하고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공사와 농지연금지원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

2. 상담

가. 「농지연금상담서」의 작성

- 「농지연금상담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및 자료관리
- 전산조회 및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하여 신청자격 및 요건 등 확인
- 「농지연금상담서」내용은 지원신청 및 재상담시 참고자료로 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여부 확인, 수급자가 농지연금 약정체결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 동의 여부 확인
- 소액담보설정농지의 가입적정 여부 확인
- 경영이양형 신청의 경우 담보농지 및 신청자 적정 여부 확인
- 민법에 의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후견의 종류에 따라 대리 범위 및 행위가능 여부 확인([별표1] 참조)

※ 상담 시 신청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나. 「농지연금사업설명확인서」(별지 제1호 첨부서식 1)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농업인에게 상세한 설명 및 서명날인

- 신청자격(농지)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 월지금액, 상환시기, 상환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담보농지 근저당권 설정 및 제한에 관한 사항
- 농지연금채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사항
- 위험부담금에 관한 사항
-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에 관한 사항 등

다. 「농지연금지급산출표」(별지 제1호 첨부서식2) 설명 및 교부

- 상담일 현재의 공시지가 및 추정 감정평가 가격 등을 적용하여

계산된 「농지연금지급산출표」상 월지급금, 농지연금채권액 등을 안내하고 약정체결 시에는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

- 「농지연금지급산출표」는 신청인과 배우자 중 연령이 낮은 자를 기준으로 적용 (단, 배우자 비승계 조건 가입인 경우는 가입자 연령기준으로 산출)

3. 신청서 접수

가. 신청장소(접수처) : 신청인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지부)

나. 신청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각 1부(승계형 신청 시 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초본(신청인) 1부
 -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이나 신청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하에 공사 직원이 인터넷(전산정보)에서 열람 및 발급대행 가능
- * 발급비용은 신청인의 휴대전화·ARS 등 인터넷 결제방법으로 신청인이 부담

다. 신청서 등 검토

- 1) 「농지연금지원신청서」 기재사항 및 자필서명 여부 등 확인
- 2) 농지연금 가입조건(연령, 영농경력) 적정여부 확인
 - 본인 여부, 연령, 주소지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영농경력은 5년 이상 여부는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확인
 - 다만,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영농경력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농지소재지 이(통)장의 「영농경력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확인서류, 직불금 지급자료 등으로 확인

3) 기타 확인사항

- 등 기 부 등 본 : 등기관리자(소유자) 일치 여부, 보유기간 및
취득원인,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제한물권 설정 여부
- 부동산 종합증명서 :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용도), 면적, 소유자, 필지별
공시지가, 농지의 위치와 형태, 각종 개발계획
편입여부,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 (지역별 인터넷
사이트 ‘일사편리’ 참고)

* 「토지이음(<http://www.eum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농지은행공간정보등을 열람하여 재확인

- ※ 신청인의 가입자격 및 담보농지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현지 확인(별지 제22호 서식), 경영이양형 담보농지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담당자와 협조하여 현지 확인(별지 제22-1호 서식)

라.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접수 시 이를 농지연금운영시스템에 입력

- 접수대장 관리 : 신청서 내용을 운영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농지연금신청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이 자동 생성됨

4. 대상자 결정

가. 적격 여부 확인

- 담당자는 「농지연금지원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의 세부 항목들에
대한 지원적격 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 지사장(지부장)은 「농지연금지원결정서」의 주요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지원적격 여부 결정
 - 신청인 자격요건과 담보농지의 적정여부 확인

나. 대상자 결정

- 지원적격자에 대하여는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
- 지원대상자 결정 통지
 - 지사장(지부장)은 농지연금 지원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유선통지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약정체결(농지연금지원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른 구비서류 등 안내

5. 감정평가 실시

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 농지연금 지원 적격자로 결정된 대상자가 감정평가 방식 및 감정평가 비용 납부에 동의하는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전국 감정평가법인등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선정 (단, 감정평가수수료 하한가 0.8 조건을 희망하는 감정평가법인등에 한함)
- 평가액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 제시, 재평가 요청시 성실 보완 의무, 부실·허위 평가시 손해배상책임 및 선정 취소 등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이행 각서」 <별지23-1호서식>징구

나. 감정평가 의뢰

-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필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
 -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지연금 지원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서(다만, 아래의 라. 감정평가서 검토에 따른 검토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담보농지 가격결정에 충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에서 감정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제출받은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여 담보농지 가격결정 가능
 - 감정평가서의 기준시점 또는 가격기준일이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일 또는 농지연금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일 것

다. 감정평가 비용

-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 단,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가 감정평가비용을 대납한 경우, 최초 월지급금에서 차감 후 지급
 -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별지 제27-1호)
 - (최초 월지급금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차 월지급금에서 차감)

라. 감정평가서 검토

- 감정평가서를 제출 받으면 「감정평가서 검토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가격을 조사
 - 평가목적(보상·담보 등 특수평가 목적이 아닐 것) 기재, 지목·면적 사정의 적정성
 - 지원대상이 아닌 토지, 시설물, 과수목 등 포함 여부
 - 산출근거의 구체적 제시 여부 등
- 농지연금사업 심의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의 1.8배 이하 : 지사심의 후 지원여부 결정
 -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의 1.8배 초과 ~3.0배 이하 : 지사심의 후 지역본부심의회 심의요청⇒ 지역본부 심의회개최⇒ 심의결과 통보⇒ 지원여부 결정
 -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의 3.0배 초과 : 지사심의 후 본사심의회 심의 요청 ⇒ 본사 심의회개최 ⇒ 심의결과 통보⇒ 지원여부 결정
- * 감정평가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회 운영방법은 별도 공문시행

<농지연금사업 심의회>

- 지사 심의회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지사심의회」를 준용
- 지역본부 심의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6인
 - 위원장 : 지역본부장
 - 위 원 : 지역본부 및 지사 농지은행부장 1~2인, 지역본부 직원 2~4인
 -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사 심의회」 준용
- 본사 심의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
 - 위원장 : 농지은행처장
 - 위원(6인) : 농지은행처 내 부장 3인 및 직원 3인
 - 간사 : 본사 농지연금사업 담당직원
 - 심의사항
 - 농지연금 담보농지가격(단가)의 적정성 여부
 - 지원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적격성 여부 등
 - 회의 및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 가능
 - 가부(可否) 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짐

마. 감정평가 결과 통보

- 감정평가 대상자에게 감정평가결과(본사심의 결과 포함)를 문서로 통지

바. 감정평가 가격결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별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지사심의회(별지 제25호 서식)를 거쳐 공사와 농지 소유자간에 필지별로 합의된 금액
다만, 감정평가금액 그대로 가격결정할 시에는 지사심의회의 심의 생략 가능

6. 약정체결

가. 약정 체결

- 농지연금지원약정 체결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 이행
- 계약당사자
 - 공 사 : 채권자
 - 농지연금수급자 : 채무자

나.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 ※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 작성부수 : 2부(신분증 사본 첨부)
 - 작성 및 확인자 : 대리인(법무사)

다. 농지연금지원약정 체결

1) 「농지연금지원약정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약정 체결

2) 약정 체결 시 확인사항

- 농지연금지원약정 체결 전 지원약정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약정체결

- 월지급금과 농지연금채권총액 최종확인

- 약정체결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연금채권총액은 신청인이 선택한 고정금리(2.0%)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 변동금리 적용 시에는 약정시점 기대이율(3.65%)로 농지연금채권총액 산출

- 계약 당사자(본인)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으로 본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여부 확인

- 날인된 인영의 인감증명서와의 일치 여부

- 월지급금 지급일, 지급방식, 지급유형, 입금계좌번호(수급자명의) 확인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약정체결시 「농지연금계좌입금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첨부

- * 부부 공동소유농지에 대하여는 배우자 동의하에 수급자(신청인) 계좌로 입금

3) 지원약정서 작성 : 2부

- 지원약정을 체결한 후 「농지연금지원약정서」 1부를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지사에서 보관

라.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별지 제7호 첨부 서식)에 의거 계약 체결

-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에 명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근저당권 설정권자(채권자) 및 근저당권 설정자(채무자)의 서명·날인

- 피담보채권의 범위

-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 설정기간

- 담보물권의 목록

2) 설정순위 : 담보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1순위로 하여야 하며 설정일 이전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사항 및 제한물권 등과 같은 다음의 선순위 권리가 없어야 함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등
- 제한물권 :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다만, 해당 농지에 제한물권(선순위채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는 담보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2순위로 할 수 있음)

3) 설정금액

- 약정체결 시 산정한 한계연령(100세)까지의 농지연금채권총액의 120%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만원미만 절사)
다만, 경영이양형의 경우에는 약정기간 만료시까지의 농지연금채권총액의 120%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설정

4) 비용부담

-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는 공사가 부담하며 설정에 따른 법무사보수료는 채무자가 부담. 단,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가 법무사보수료를 대납한 경우, 최초 월지급금에서 차감 후 지급(최초 월지급금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차 월지급금에서 차감)
* 「법무사 보수료 대납요청서」 (별지 제27-2호)

5) 법무사 등기의뢰

- 법무사 선임(지사 선임 법무사 활용) 및 등기의뢰 : 공사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위하여 법무사와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
- 법무사 보수 : 대한 법무사협회 회칙 제76조 별표 「법무사보수표」에 의한 보수액의 60% 감액 적용
* 가급적 전자 표준양식(e-form)을 사용하여 경비절감

마. 약정의 취소 및 철회

- 취소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회차 월지급금 지급 결정일까지
약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 철회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회차 월지급금 지급 결정일까지(1일~10일 체결시 익월 10일까지, 11일~31일 체결시 익익월 10일까지) 약정을 체결한 자가 약정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 회수금 : 위험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된 월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납부일 전일까지 약정이자율 적용)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회수한 후 약정효력 소멸
- * 약정취소 및 철회에 따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며, 사망 시는 제외

바.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위약금 부과

- 경영이양형의 경우 농지연금 가입(약정)기간과 상관없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미매도시 농지가격¹⁾의 2%부과
- * 농지가격¹⁾ : 가입(약정체결)당시 농지가격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방식 모두 평가율 100%적용
- 약정기간 만료 이전 약정을 해지하거나 약정기간 만료시 공사에 담보농지를 미매도하면 위약금 부과
-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담보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농지 미매도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 납부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는 부과하지 않음
- * 단, 불가피한 사유는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담보농지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한 경우로써 공사의 사정 등으로 담보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 불가피한 사유 : ① 담보농지 매입 시 담보농지 매입적용단가(공공임대용농지 매입사업)를 초과하는 경우로 공사에서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당해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사업비 예산부족 등의 사정으로 공사에서 담보농지의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③ 가입자(승계조건 가입의 경우엔 배우자 포함)의 사망으로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 할 수 없는 경우, ④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담보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편입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담보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 할 수 없는 경우, ⑤ 다른 법령에 따른 구역·지역 등의 해제·변경 등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로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 할 수 없는 경우, ⑥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가입 후 다른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경우(최소의 경우에만 해당)

7. 월지급금 지급 등

가. 월지급금 지급

1) 월지급금의 산정

-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수지상등*을 만족하는 월지급금 산정하고 그 상한액은 월 3백만원으로 함

* 수지상등 : 장래 예상되는 수입(위험부담금)과 손실(농지가격 이상의 채무)의 현재가치가 같은 수준을 말함

- 기초변수

기대이율	위험부담금	농지가격상승률	사망률
연 3.65%	연 0.5%	연 2.85%	‘20년 완전생명표

- 배우자 승계의 경우에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급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수급자 기준 지급한도는 월 3백만원 적용

- 월지급금은 필지별로 산정하고 산출액의 10원 미만은 버림
- 신청일 현재 지급방식별로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실제연령과 상관없이 각각 지정한 연령으로 간주하여 월지급금을 계산

<지급방식별 월지급금 계산>

지급방식		월지급금 계산
종 신 형	종신정액형	95세 이상인 경우엔 94세로 간주
	진후후박형	96세 이상인 경우엔 94세로 간주
	수시인출형	87세 이상인 경우엔 86세로 간주
기 간 형	기간정액형(5년)	96세 이상인 경우엔 95세로 간주
	기간정액형(10년)	95세 이상인 경우엔 94세로 간주
	기간정액형(15년)	95세 이상인 경우엔 94세로 간주
	경영이양형	실제연령 적용

2) 월지급금 지급일 : 매월 15일

- 최초 지급 시는 약정체결일을 기준으로 당월 10일까지 완료된 건에 대하여 당월 15일에 지급(당월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 약정체결 건은 익월 15일에 지급)
 - 최초 월지급금 지급 시 근저당권설정 등기완료 확인 후 지급
단, 수시인출형의 경우 수시인출금으로 선순위채권(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만 해당)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금지급시 선순위채권을 상환 및 말소시켜 담보농지에 대한 공사의 근저당권 설정은 1순위로 하여야 함
- 지급일이 은행휴무일(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 가입자가 지정한 연금수령 예금계좌로 매월 입금

3) 월지급금 지급 만료 통지

- 기간형 가입자에게 월지급금 지급 만료 통지(별지 제29호 서식)
 - 월지급금 지급 만료 60일 이전에 수급자에게 통지

나. 위험부담금

- 1) 농지연금의 미래손실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료 성격의 위험부담비용을 말함
다만, 경영이양형의 경우에는 위험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 2) 징수시기
 - 매월 월지급금 지급일 마다 선납(연금채권에 계상)
- 3) 징수방법
 - 농지연금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에서 농지연금채권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징수
 - 약정해지시 농지연금수급자는 위험부담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일시상환

4) 산출방법

- 농지연금채권에 연0.5%를 곱하여 산출

$$\text{농지연금채권액} \times 0.5\% \times (\text{일수}/365\text{일})$$

- * 농지연금채권액 : 전월 채권액(이자포함)과 당월 월지급금의 합계액
- * 일수 : 당월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익월 월지급금 지급일 전일까지

5) 환급

-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 가능
 - 환급액은 약정해지일로부터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농지연금채권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급

다. 대출이자율

1) 약정이율

- ① 고정금리 : 2.0%
- ② 변동금리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2) 이율 적용방법 : 농지연금 지원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

※ 약정이자는 매월 연금채무에 가산

제III장. 사후관리

1. 약정변경

가. 약정의 변경

1) 지원약정 변경범위

- 농지연금수급자(배우자), 월지급금, 농지연금채권액, 담보농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입금계좌번호, 지급방식 등

2) 지원약정 변경 사유

- 농지연금수급자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
-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담보농지 일부가 수용(편입)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 농지연금수급자가 추가로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 월지급금 지급계좌번호(통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가입비의 중도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등
- 담보농지가 경지정리에 의하여 환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면적 변경이 된 경우
- 담보농지의 일부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 중 일부(개별) 필지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 ※ 일부(개별)필지의 약정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지원약정서의 담보농지를 필지별(단위)로 해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연금수급자가 최초 약정한 지급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단, 경영이양형으로 가입한 경우 변경 불가)

나. 약정변경 절차

1) 신청 및 접수

- 구비서류 : 농지연금수급자(배우자)가 서명·날인한 「농지연금약정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약정변경사유 증빙서류(사망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 신청서 제출 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필히 확인(신분증 사본첨부)
 - *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가입당시 배우자승계조건 가입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초 약정체결일 이후 채무인수일까지 계속 하여 법률혼 관계 유지여부 확인

2) 약정변경 사유별 처리절차

① 농지연금수급자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

- 농지연금수급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를 배우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초 지원약정사항의 승계 및 근저당권 설정자(채무자) 변경 등 채무인수 조치
 - 채무인수시 : 「농지연금약정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첨부
 - 배우자의 연금수급 승계는 배우자가 담보농지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한함
 - 등기된 근저당권 설정자(채무자)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 등기
- ※ 배우자의 사망, 이혼, 채무인수 거절 등 농지연금수급자의 승계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농지연금지원약정서」에 “OO년 OO월 OO일 농지연금수급 승계자격 상실”이라고 적서 후 담당자 확인·날인

② 담보농지 일부가 수용·편입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농지전용(허가·신고)증 사본, 공공사업편입관련 공문사본 등 확인)

- 회수액 = $\frac{\text{편입(전용)면적} \times \text{해당필지 단가}}{\text{담보총가격}} \times \text{대금납부일까지의 농지연금채권액}$

* 약정체결 시 농지단가 및 가격 적용

-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월지급금은 계속 지급. 단, 월지급금이 감액조정됨을 약정변경 시 「농지연금지급산출표」로 확인 설명
- 해당 담보농지 일부필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액을 상환 시 「농지연금채무액 상환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발부
- ③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 채권최고액 설정금액 대비 농지연금채권액 비율이 85%에 도달하는 때에 농지연금수급자에게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해야 함
 - 시기 : 추가 근저당권설정(설정금액 변경)은 채권최고액 설정금액 대비 농지연금채권액 비율이 85%에 도달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추가 설정하는 채권최고액은 월지급금의 추가지급기간 연장(10년) 시점까지 발생하는 채권액의 120%에서 기 설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④ 담보농지에 추가로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 담보농지 가격의 현저한 상승 등으로 농지가격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
- * 단, 영농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국가기반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임차권 설정은 동의 가능
- ⑤ 통장계좌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통장계좌번호 변경 시 「농지연금약정변경신청서」에 변경되는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
- ⑥ 가입비의 중도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 가입비 납부 시 『농지연금채무액 상환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발부 및 『농지연금지급 산출표』로 채무액 변동내역 설명
- ⑦ 담보농지가 경지정리에 의하여 환지된 경우
 - 환지 부지정 또는 평정가격이 감소되어 청산금을 수령하는 필지의 경우는 상기 2)의②의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
 - 평정가격이 증가된 필지의 경우는 농지가격을 재산정하여 약정변경 후 연금지급

- ⑧ 담보농지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면적 변경이 된 경우
 - 지적재조사 조정결과 농지면적이 감소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필지는 상기 2)의②의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
 - 농지면적이 증가된 필지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가입 시 농지단가를 기준으로 농지가격을 재산정하여 약정변경 및 근거당 설정 변경 후 연금지급
- ⑨ 담보농지의 일부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상기 2)의②의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
- ⑩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 중 일부 (개별) 필지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기 2)의②의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
- ⑪ 농지연금수급자가 지급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
 - 월지급금은 가입 시 약정한 기초변수 및 담보농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시점의 연령으로 재산정

3) 약정변경의 심사 및 통지

- 담당자는 약정변경사유, 변경결과, 채권확보의 이상 여부 등 「농지연금약정변경심사서」(별지 제9호서식)의 세부항목 내용을 검토작성
- 지사장(지부장)은 「농지연금약정변경심사서」의 주요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
- 약정변경통지는 농지연금수급자(배우자)에게 「농지연금약정변경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로 서면 통지(유선통지 병행)

2.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개요

- 1) 조사시기 : 연중
- 2) 관리기간 : 약정해지시까지
- 3) 조사대상 : 농지연금 수급자 및 담보농지
- 4) 조사내용 : 농지연금수급자 및 배우자 사망 등 인적사항 변동여부, 농지소유권 변동사항 및 농지이용 상태 등
- 5) 관리방법 : 지사(지부)에서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지연금사후관리조사표」(별지 제12호서식)에 작성하여 부장 확인 및 내부결재 후 운영시스템에 등록관리
- 6) 결과보고
 - 당해년도 사후관리 실시 결과는 「농지연금약정해지현황」(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익년도 3월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사 → 지역본부 : 익년도 3월 10일까지
 - 지역본부 → 본사 : 익년도 3월 15일까지

나. 사후관리의 범위

- 1) 농지연금수급자 관리
 - 농지연금수급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관리
 - 사망에 따른 주민등록말소 등 연금수급자의 변동사항
 - 사별, 이혼, 결혼(재혼 포함) 등 배우자의 변동사항
 - 이주(이민 포함)에 따른 거주지(주소지) 변동 등
- 2) 담보농지 관리
 - 담보농지 권리 및 이용상황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확인·관리
 - 농지소유권 상실 여부
 - 농지 전용 등으로 농지로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농지 훼손 여부 등

-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제한물권 설정여부 확인·관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제한물권 :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

다. 사후관리 방법

1) 농지연금수급자 관리

- 연금수급자와 배우자의 사망, 주소지 변동 등 인적사항 변동여부 확인
 - 공부확인(매월) :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활용) 확인
 -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조를 받아 행정안전부에 요청
 - 방문확인(매년 1회 이상)
 - 전화확인(분기 1회 이상) : 약정체결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 월
- 공부상 사망사실이 등재되기 전에 가족 등으로부터 사망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사망진단(확인)서, 사망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

2) 담보농지 관리

- 소유권 상실(변동) 및 제한물권 등 설정여부 확인
 - 공부확인(반기 1회 이상) : 담보농지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
 - 지사에서는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지적전산자료(3월, 9월)를 활용하여 담보농지 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공부를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
 -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조를 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지적전산자료를 지사에 제공
 - * 공사법 제48조(관계서류의 열람 등)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요청가능
- 농지이용 및 관리상태 등 확인
 - 매년 1회 이상 현장 확인을 하고 필요 시 제3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관련내용을 확인
 - * 가입자 관리지사에서 농지 관할지사에 조사협조 의뢰할 수 있으며, 농지 관할지사에서는 조사 후 해당지사에 결과 통지

라. 사후관리 조사결과 처리방법

1) 기록관리

- 사후관리 조사결과는 전산시스템(사후관리)에 입력 관리
- 사후관리 실시에 따른 변경사항(월지급금 지급정지 및 약정해지 등)은 유형별 조치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전산입력 등 관리

2) 유형별 조치방법

가)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및 농지연금 지원 신청 시 ‘비승계’로 가입한 경우

- ① 농지연금수급자의 사망사실 확인일에 월지급금 지급정지 조치 및 상속인에게 「농지연금약정해지통지서」(별지 제15-1호서식) 송부
 - 농지연금약정해지 통지 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무를 전 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가능함을 안내

* 분할상환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연금채무의 40%이상 상환하고 상환일에 분할상환약정 체결. 상환 후 남은 잔액은 2년 동안 2회 이내에 분할 상환하되 1회차 상환분은 분할상환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남은 잔액의 50%이상으로 함 (별지 제26호서식)

- ② 고지한 채권액에 대하여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적 조치(근저당권 실행)착수
- ③ 상속인이 임의상환불가 의사표시를 한 경우 : 법적조치 착수

나)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입 당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에 한함)가 있는 경우

- ① 농지연금수급자의 사망사실 확인일에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 및 농지연금채무 인수토록 통지(별지 제16호서식)
 -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승계받을 경우는 농지연금수급자의 사망일

(실제사망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일 또는 사망사실의 공부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 소유권이전 및 채무인수토록 안내

- 배우자가 소유권이전 및 채무인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농지연금 약정변경신청서를 제출받고 약정변경심사절차에 따라 처리

*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 전에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계좌말소 등으로 지급이 안 된 월지급금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완료한 배우자에게 월지급금 지급 시 일괄 지급

②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거절할 경우는 농지연금약정해지 통지 (별지 제15호-1호 서식)

- 이후 절차는 상기 가)의 ①~③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다)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소유권상실 확인일에 월지급금 지급정지 조치 및 농지연금약정해지 통지(별지 제15호서식)

- 이후 절차는 상기 가)의 ②~③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다만,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담보농지 일부가 수용(편입)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약정변경 절차에 의하여 처리

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① 농지연금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의 85%에 도달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채권최고액 추가설정(설정금액변경)을 완료하도록 서면(유선)통지

(「근저당권추가설정(증액)요청서」: 별지 제17호서식)

- 근저당권 추가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 받아 등기조치

- ② 기한 내 근저당권 추가설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정지 조치 및 농지연금약정해지 통지 (별지 제15호서식)

- 이후 절차는 상기 가)의 ②~③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마)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와 담보농지의 전용 등의 경우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포함)

○ 해당사실 발생 확인일에 월지급금 지급정지 조치 및 농지연금약정 해지 통지(별지 제15호서식)

- 이후 절차는 상기 가)의②~③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바) 농지훼손 또는 농지 방치 등의 경우

① 해당사실 발생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토록 촉구

②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월지급금 지급정지 조치 및 농지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③ 지방자치단체의 처분명령에 따른 소유권 변동 시 약정 해지

3. 월지급금 지급정지

가. 월지급금 지급정지

○ 농지연금채권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농지연금 수급자에게 월지급금 지급을 중단하고 채무이행청구 조치

나. 월지급금 지급정지 사유

1)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5)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포함)
-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 7) 농지 훼손 또는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 위 지급정지사유 중 3)과 5)~7)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지원 가능

다. 농지연금 약정해지 통지 및 효력

1) 통지방법 및 통지내용

- 농지연금약정해지 사유발생시 농지연금수급자 또는 배우자 및 상속인에게 서면 및 유선 통지 (「농지연금약정해지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 15-1호서식 발송)

* 서면통지는 배달증명부에 의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2) 약정해지 효력

- 지급정지사유 발생 확인일에 월지급금 지급정지
- 약정해지 후 농지연금수급자 및 배우자(법정상속인)등에게 채무이행청구

라. 농지연금채무 상환

1) 농지연금수급자의 농지연금채무 상환

- 전부상환(약정해지): 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 전부를 상환하고 약정해지 가능
 - 경영이양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농지연금채무 전부상환을 위한 약정해지시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위약금 부과(필지별 해지 포함)

○ 일부상환(일부 해지 후 약정유지)

① 일부필지 해지 : 수급자가 담보농지 중 일부(개별) 필지의 채무를 상환하고 해지하는 경우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약정 유지

② 일부면적 해지 : 다음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 :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담보농지의 일부가 수용·편입되는 경우, 담보농지의 일부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첨부)

○ 중도상환(약정유지) : 가입자가 기체결된 약정의 변동 없이 농지연금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고 기존 약정은 유지

- 최초약정일로부터 3년에 1회씩만 허용

2) 농지연금채무의 상환(일부면적 해지 및 중도(부분상환 제외)시에는 지원약정 및 담보해지를 결정하고(별지 제18호서식) 근저당권 말소서류 교부

- 근저당권 해지비용은 농지연금수급자가 전액부담

마. 채권회수 방법 및 절차

1) 채권회수 방법

① 농지연금수급자 등으로부터 농지연금채무액 회수

○ 농지연금약정해지 사유발생시 농지연금채무액 전액회수.

단, 농지연금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약정해지의 경우는 분할상환 가능

※ 종신행과 기간정액형은 사망 등 약정해지시 회수하고, 경영이양형은 연금지급기간 종료 시에도 회수

- ② 근저당권 실행(임의경매를 통한 매각) : 농지연금수급자 등이 농지연금채무를 납부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또는 경영이양형의 경우 가입자가 통보받은 기한 내 담보농지 매매계약을 체결(④에 따름)하지 않아 농지연금채무를 정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담보농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
- ③ 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각 사업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공사에서 매입가능
- ④ 경영이양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간 종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서 매입 시 담보농지 매입절차 등 세부내용은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의 공공임대용농지매입사업 기준에 따름

2) 채권회수 절차

① 농지연금채무 상환통지

- 농지연금약정해지 통지(별지 제15호서식 또는 제15-1호서식) : 농지연금 지급정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 채권 상환기한일 : 약정해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 농지연금수급자 사망에 따른 약정해지에 한하여 분할상환가능 (분할상환에 대해서는 제3장 사후관리 참조)
 - * 상환기한일 이전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상환불가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임의경매 처분 동의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접수 후 저당권 실행
 - 분할상환약정일 10일전까지 납부고지서 발송 및 유선통지
- 경영이양형의 경우에는 담보농지 매매계약 체결(약정해지) 통지(별지 제15-2호서식) : 농지연금 지급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 담보농지 매매계약 체결(약정해지) 통지 후 담보농지 매매계약 체결여부 및 대금정산에 따라 농지연금채권(위약금 포함) 수납 처리

※ 담보농지 매입절차 등 세부내용(매매계약체결, 소유권이전(근저당권말소포함) 및 대금정산)은 매입시점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의 공공임대용농지 매입사업 기준에 따름.

- ② 농지연금수급자 등으로 부터 농지연금채권액을 회수하는 경우
 - 전액상환 시 근저당권 설정해지 서류 교부
 - 농지연금채권 회수액은 지체 없이 농지관리기금에 상환
- ③ 농지연금채무상환이 안 된 경우는 근저당권 실행
 - 저당권실행착수통지서(별지 제19호서식) 발부
- ④ 농지연금 채권회수 관련 세부적인 처리는 기금사업채권관리규정에 따름

바. 농지연금채권의 행사범위

- 1) 공사가 지원한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 행사는 담보농지에 한함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 ①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 ②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 ③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 ④ 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제Ⅳ장. 행정사항

1. 사업시행계획 수립

가. 근 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동 시행령 제15조제1항7호

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 사업시행 목적
- 사업추진계획 및 내용
- 사업추진규모 및 소요예산
- 사업시행기간 및 정산 등

다.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사업시행 전년도 12월(공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업무관할

- 본 사 : 사업시행계획수립,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제도·업무처리요령관리, 상품모형 관리, 운영시스템관리, 홍보·교육, 사업시행 및 실적관리 등
- 지역본부 : 상담, 홍보, 지사 업무조정·교육, 사업실적 및 자료관리·보고 등
- 지 사(지 부): 상담·신청접수, 약정체결, 연금지급, 사후관리, 채권관리 등

3. 사업자금 배정

- 월지급금
 - 매월 10일까지 농지연금지원약정체결(지사)에 따라 자금요청(본사 → 기금관리처)·수령 후 본사에서 일괄 집행
- 가입부대비
 - 본 사 : 매년 1월 중 자금배정(본사 → 지역본부)
 - 본 부 : 지사 요청시 자금배정(지역본부 → 지사)
 - 지 사 : 지사 필요시 자금요청(지사 → 지역본부)

4. 채권관리현황 보고

- 내 용 : 매월 말 채권증감 등 현황
- 보고서식 : 「농지연금채권관리현황」(별지 제28호서식)
- 제출기한 : 익월 5일까지(지역본부 → 본사)

5. 사업정산

가. 근 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나. 사업정산서 제출

- 1) 정산서 제출기한 : 익년도 1월 10일까지
 - 「농지연금사업 정산서」 : 별지 제20호서식
- 2) 정산서 제출절차 : 지사장 → 지역본부장 → 사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 손익금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
- 이익금 : 예치이자 등
- 결손금 : 농지연금채권과 그 상환액의 차액,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6. 사업추진실적 보고

- 보고서식 : 「농지연금지원실적」(별지 제21호서식)
- 제출기한
 - 본 사 : 매 분기말 익월 15일까지(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7. 업무처리요령에 관한 사항

- 이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사항이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때에는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 이 업무처리요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성년후견제도 이용 시 약정체결 처리 절차

- ☐ 농지소유자가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보호자 등이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여 대리로 농지연금 약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후견 등기 사항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후견에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성년후견 :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금융거래상 대리권의 제한 여부 등)를 확인하고 성년후견인의 대리로 약정 체결
 2. 한정후견 : 한정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여 약정 체결
 - 가. 한정후견인이 ‘동의권’을 가진 경우 동의권의 범위를 확인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 피한정후견인(농지소유자)와 약정 체결
 - 나. 한정후견인이 ‘대리권’을 가진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하여 한정후견인의 대리로 약정 체결
 3. 특정후견 : 농지소유자와 약정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후견인의 대리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기간 및 특정후견인의 행위에 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특정후견인의 대리로 약정 체결
 4. 임의후견(후견계약) : 농지소유자와 약정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견 계약 상 임의후견인의 대리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동의 여부, 후견계약 상 담보제공 등 금융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임의후견인의 대리로 약정 체결
- ☐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한 경우 후견인의 신분 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농지연금지원신청서) 하단에 동의 또는 대리 사항을 표기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인감증명서 징구)하여야 한다.
- ☐ 위 1. 또는 2.의 나.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심판서 등을 징구하여 약정체결 한다.
- ☐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후견인의 행위(동의 또는 대리)에 대한 후견감독인의 동의 여부 동의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대리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피후견인의 의사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목 록

1. 농지연금상답서 (별지 제1호 서식)
2.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 (별지 제1호 첨부 서식 1)
3. 농지연금지급신출표(고정금리 2.0%, 종상징약형) (별지 제호 첨부 서식 2-1)
4. 농지연금지급신출표(변동금리 3.65%, 종상징약형) (별지 제호 첨부 서식 2-2)
3. 농지연금지급신출표(고정금리 2.0%, 종상징약형(10%유대)) (별지 제호 첨부 서식 2-3)
4. 농지연금지급신출표(변동금리 3.65%, 종상징약형(10%유대)) (별지 제호 첨부 서식 2-4)
3. 농지연금지급신출표(고정금리 2.0%, 종상징약형(5%유대)) (별지 제호 첨부 서식 2-5)
4. 농지연금지급신출표(변동금리 3.65%, 종상징약형(5%유대)) (별지 제호 첨부 서식 2-6)
5. 농지연금지급신출표(고정금리 2.0%, 전후후약형) (별지 제호 첨부 서식 2-7)
6. 농지연금지급신출표(변동금리 3.65%, 전후후약형) (별지 제호 첨부 서식 2-8)
7. 농지연금지급신출표(고정금리 2.0%, 수시인출형) (별지 제호 첨부 서식 2-9)
8. 농지연금지급신출표(변동금리 3.65%, 수시인출형) (별지 제호 첨부 서식 2-10)
9. 농지연금지급신출표(고정금리 2.0%, 기간징약형) (별지 제호 첨부 서식 2-11)
10. 농지연금지급신출표(변동금리 3.65%, 기간징약형) (별지 제호 첨부 서식 2-12)
11. 농지연금지급신출표(고정금리 2.0%, 경영양형) (별지 제호 첨부 서식 2-13)
12. 농지연금지급신출표(변동금리 3.65%, 경영양형) (별지 제호 첨부 서식 2-14)
13. 농지연금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14. 영농경력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15. 농지연금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4호 서식)
16. 농지연금지원 결정서 (별지 제5호 서식)
17. 농지연금계좌 입금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18. 농지연금 지원 약정서 (별지 제7호 서식)
19.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별지 제7호 첨부 서식 1)
20. 농지연금 수시인출금 신청서 (별지 제7호 첨부 서식 2)
21. 농지연금 수시인출금 수령 및 상환 등 동의서 (별지 제호 첨부 서식 3)
22. 농지연금 수시인출금 심사서 (별지 제7-1호 서식)
23. 농지연금 약정변경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24. 농지연금 약정변경 심사서 (별지 제9호 서식)
25. 농지연금 채무액(상환)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26. 농지연금 약정변경 통지서 (별지 제11호 서식)
27. 농지연금 수시인출금 지급 통지서 (별지 제11-1호 서식)
28. 농지연금 사후관리 조사표 (별지 제12호 서식)
29. 농지연금 약정 해지현황 (별지 제13호 서식)
30. 농지연금 약정 (해지, 철회, 취소)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31. 농지연금 약정해지 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32. 농지연금 약정해지 통지서 (별지 제15-1호 서식)
33. 농지연금 약정해지 통지서(경영상태형) (별지 제15-2호 서식)
34. 농지연금 승계 안내서 (별지 제16호 서식)
35. 농지연금 승계 안내서(경영상태형) (별지 제16-1호 서식)
36. 근저당권 추가설정(증액) 요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37. 지원약정 및 담보해지서 (별지 제18호 서식)
38. 저당권 실행 착수통지서 (별지 제19호 서식)
39. 저당권 실행 착수통지서(경영상태형) (별지 제19-1호 서식)
40. 농지연금사업 정산서 (별지 제20호 서식)
41. 농지연금 지원 실적(/4 분기) (별지 제21호 서식)
42. 농지연금사업 현지조사서 (별지 제22호 서식)
43. 농지연금사업 현지조사서(경영상태형) (별지 제22-1호 서식)
44.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별지 제23호 서식)
45. 감정평가에 관한 이행각서(별지 제23-1호 서식)
46. 감정평가서 검토표 (별지 제24호 서식)
47. 담보농지가격결정 심의조서 (별지 제25호 서식)
48. 분할상환약정서 (별지 제26호 서식)
49.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 요청서 (별지 제27-1호 서식)
50. 법무사 보수료 대납 요청서 (별지 제27-2호 서식)
51. 농지연금 채권관리현황(월) (별지 제28호 서식)
52. 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 만료 통지서 (별지 제29호 서식)
53.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30호 서식)
54. 임의경매 처분 동의서(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농지연금상담서
(20년월일)

상담직원	직 급		성 명		상담 구분	☐ 내방 ☐ 방문 ☐ 전화
상 담 인	신청인 과 관		성 명			
상담동기	공사홍보, 신문·방송 등, 기 이용자 권유, 기타 ()					

1. 인적사항 등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자녀	성명		연락처	
	주소			
연령	세	영농경력	년	소유농지 m ²
		장기영농인 여부	여 ☐ 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여부		여 ☐ 부 ☐ (생계급여 여 ☐)	배우자 승계 여부	여 ☐ 부 ☐

※ 연령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중 적은연령 기재
(비승계 가입 및 배우자가 만 60세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인 연령 기재)

영농경력과 소유농지 : 신청인(농지소유자) 기준으로 작성

2. 소유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가 ¹⁾ (원/㎡)	농지가격 (면적×지가)	신청 여부	비고
						☐	
						☐	
계							

※ 1) 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

※ 비고 : 보유기간 및 농지와 주소지사이 거리의 적격여부, 실제영농이용 여부, 비농업용 시설·불법건축물 등 설치여부,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사항 및 제한물권설정 여부 등, 공동소유여부, 개발계획 시행여부 등을 확인

※ 경영이양형의 경우에는 공사가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만 가입 가능함

3. 지급방식 및 대출이자율 적용

지급방식	종신형	☐ 종신정액형 (우대여부 ☐ 저소충득 ☐ 장기영농인)		
		☐ 전후후박형 ☐ 수시인출형		
	기간형	유형	☐ 기간정액형 ☐ 경영이양형	
		기간	☐ 5년	☐ 10년
대출이자율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 우대여부 : 종신정액형 가입에 한해 저소득층 또는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월지급금 우대 지급
- ※ 전후후박(前厚後薄)형 : 월지급금을 최초 지급일부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보다 적게 받는 유형
- ※ 수시인출형 : 종신형 농지연금의 총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 경영이양형 : 연금지급 만료 후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유형
- ※ 고정금리는 연 2.0%, 변동금리는 매 6개월마다 재산정됨.
- ※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자율 인상 시에는 채무액이 증가될 수 있음.

4. 상담결과

예상월지급금	원	가입의향	☐ 있음 ☐ 없음
상담의견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

이 설명서는 농지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분이 알아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듣고 이해하신 경우 자필 확인란에 자필 기재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소유자 : _____ (배우자 : _____)

연 락 처 : ☎ _____

* 성년후견인이 대리하는 경우 별도 서명 날인

상 담 지 사 : _____ 지사

설 명 직 원 : 직급 _____ 성명 _____

차 례

1.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요?
2. 가입조건은?
3. 농지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4.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 농지연금 신청 및 계약시 필요한 서류 등은 무엇인가요?
6. 담보제공(근저당권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7. 위험부담비용, 이자는 얼마이며 어떻게 납부하나요?
8. 언제 상환해야 합니까?
9. 얼마를 상환해야 합니까?
10. 농지연금 가입이후 지급기간 중도에 일부필지 해지, 일부금액 상환, 또는 약정취소 및 철회가 가능한지요?
11. 수시인출형의 경우 수시인출 가능액 및 인출방법은?
12. 경영이양형의 경우 담보농지는 어떻게 합니까?

1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자필서명

2 가입조건은?

- ☐ 아래조건에 모두 적합하여야 농지연금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조건	확인	적격여부
연령	가입자인 농업인이 만 65세 이상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승계 가입) *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세 세	_____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영농경력	년	_____
신청농지	이용 상황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예, 아니오 _____
		농지에 불법건축물 및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등이 없을 것	예, 아니오 _____
	가격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방법 중 가입자가 선택	천원 _____
	권리 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예, 아니오 _____
	제한 물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기 등이 없을 것 * 단, 제한물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액(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일 것	예, 아니오 _____
	보유 기간	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2년 이상 소유 * 단, 취득원인 및 취득시기 구분 확인	예, 아니오 _____
	주소지 사이 거리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가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결한 시·군·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일 것 * 단, 취득원인 및 취득시기 구분 확인	예, 아니오 _____
	기타		

※ 경영이양형의 경우에는 공사가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에 한함

☞ 상담자 답변에 따라 공사의 직원이 확인하면서 적격·부적격 여부를 확인.

위 가입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답변하였으며, 확인사항 이상 없음	자필서명

3 농지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 농지연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신형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형 : 종신평액형 가입자 중 저소득, 장기영농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각 10%, 5%)하는 유형
 - 전후후박(前厚後薄)형 : 월지급금을 최초 지급일부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 종신형 농지연금의 총 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일부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형 :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 연금지급 종료 후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유형

<지급방식별 가입가능 연령>

기 간	종신형	기간형			
		경영 이양형	기간정액형		
			5년	10년	15년
가입연령	만 65세 이상		만 78세 이상	만 73세 이상	만 68세 이상

□ 농지연금 가입 후 3년내 1회에 한하여 지급방식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시점까지의 농지연금채무(월지급금+이자+위험부담금)를 포함하여 월지급금이 재산정됩니다.

* 경영이양형으로 최초 가입하신 경우 변경이 불가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자필서명

4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귀하께서 가입하는 시점의 연령과 농지가격 등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 담보농지의 가격 : _____ 천원

생존시까지(기간형의 경우는 해당기간 동안) 매월 받으실 수 있는 농지 연금액은 _____ 원 입니다.

* 월지급금은 가입시 두 분의 나이 및 배우자승계조건 등의 여부에 따라 귀하/배우자 연령인 _____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수급자 기준 농지연금 지급한도액은 월3백만원이며, 배우자의 수급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자필서명

5 농지연금 신청 및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 인가요?

☐ 신청 시에는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배우자 포함) 등이 필요합니다. 추후 약정체결을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은 공사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인 동의하에 열람 및 발급대행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자필서명

6 담보제공(근저당권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을 받기 때문에, 담보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금액은 귀하께서 100세까지 농지연금을 받으신다는 가정하에(기간형의 경우는 100세까지 생존하신다는 가정하에 그때까지 발생하는) 농지연금채무액(수시인출형의 경우에는 인출가능총액을 1회차 월지급금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함)의 120%를 설정하게 됩니다.

다만, 경영이양형의 경우에는 약정기간 만료시까지의 농지연금채권총액의 120%를 설정하게 됩니다.

- ☐ 귀하의 경우에는 농지가격과 귀하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예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_____만원 정도입니다.
- ☐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비용(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은 공사에서 부담하게 되나 법무사 보수료 및 근저당권 해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공사에서 직접 의뢰한 업체의 경우 법무사 보수료는 60% 감액되어 적용됩니다.

(단, 귀하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가 법무사보수료를 대납한 경우 최초 월 지급금에서 법무사보수료를 차감 후 연금을 지급하며 월지급금이 법무사보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차 월지급금에서 차감합니다)

- ☐ 또한, 담보제공 농지에 근저당권 설정 이후부터는 공사의 동의 없이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월 지급금이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자필서명
------------------------	------

7 위험부담비용, 이자는 얼마이며 어떻게 납부하나요?

- ☐ 농지연금 가입자께서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부담비용은 위험부담금이 있습니다. 위험부담금은 매월 농지연금 지급시에 농지연금채권액의 연0.5%를 연금채무에 포함되어 지원약정이 해지될 때 납부 하시게 됩니다. 위험부담비용은 수명연장 등으로 장기간 연금지급에 따른 미래손실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경영이양형의 경우에는 위험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 약정이자(고정금리 연2.0% 또는 변동금리 적용)는 매월 가산하여 연금채무에 포함되며 지원약정이 해지될 때 상환하게 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자필서명
------------------------	------

- 귀하께서 연금을 받는 도중에 농지연금채무를 갚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환하시고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약정취소(가입후 1회차 지급 이전 약정취소) 또는 약정철회(1회차 지급일부터 2회차 지급일 이전 약정 철회)하시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시 공사가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약정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가입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경영이양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간 종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무를 정산하거나 연금을 받는 도중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 전부를 상환하시고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매도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위약금

- 농지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매도시 농지가격*의 2%부과

* 농지가격 : 가입(약정체결)당시 농지가격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방식 모두 평가율 100%적용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약정이 해지되어 약정 해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가. 농지소유자(귀하)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 농지연금제도에서의 배우자(승계가능)는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당시 승계조건으로 가입하고 약정을 체결할 때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중간에 재혼하는 경우 배우자와 약정체결당시 만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연금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담보농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다.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라.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마.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 연금채권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연금 지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의 연금채권액이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의 85%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며 공사는 채권최고액의 변경(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수급자는 공사가 요구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바. 공사에 동의 없이 담보농지에 가등기담보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 사.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아. 농지를 훼손 또는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원상복구 촉구 후 기한내 복구되지 않을 시 월지급금을 지급정지하고, 지방자치단체 통보후 처분명령에 따른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약정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자필서명

9

얼마를 상환해야 합니까?

- ☐ 상환시점에 다음의 농지연금채무액과 위약금(경영이양형 가입자가 담보농지를 공사에 미매도시 해당)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월지급금 총액 + 위험부담금 누계액 + 이자 누계액

- ☐ 농지연금채무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농지를 처분(경매 등)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만약 농지처분금액(경매낙찰금액)으로 농지연금채무액을 갚고 남으면 농지연금수급자(상속인)가 돌려받고, 농지처분금액(경매낙찰금액)으로 농지연금채무액을 갚고 부족하더라도 귀하나 자녀 등(상속인)에게 그 부족분을 상환하도록 청구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자필서명

농지연금 가입이후 지급기간 중도에 일부필지 해지, 일부금액 상환, 또는 약정취소 및 철회가 가능한지요?

- 가. 농지연금사업은 가입자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종신까지 지급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농지의 일부(개별)필지에 대한 중도해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일부(개별)필지의 농지연금채무를 전액 상환하시면 일부(개별)필지를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농지가 불가피하게 공공사업에 편입(수용) 또는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면 해당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나. 연금을 지급받으시면서 약정내용의 변경 없이 농지연금채무를 중도(일부 또는 전부)상환하고 약정은 유지됩니다. 중도상환은 가입일로부터 3년 마다 1회씩 가능합니다.
- 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약정의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 약정체결일로부터 1회차 월지급금 지급 결정일까지 약정을 취소
 - 철회 : 약정체결일로부터 2회차 월지급금 지급 결정일까지(1일~10일 체결시 익월 10일까지, 11일~31일 체결시 익익월 10일까지) 약정을 철회
 -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자께서는 위험부담금을 제외한 기 지급된 월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납부일 전일까지 약정이자율 적용)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정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가입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자필서명

11

수시인출형의 경우 수시인출 가능액 및 인출방법은?

- ☐ 종신행 농지연금 중 수시인출형으로 가입한 담보농지는 수시로 가입자가 필요한 시기에 신청을 통해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내(백만원 단위)에서 인출가능 합니다. 수시인출금 신청은 수시인출금을 받고자 하는 해당월의 전월말일까지 공사에 「농지연금수시인출금신청서」(별지 제7호 첨부서식2)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에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약정시 신청 가능합니다.)
- ☐ 수시인출금은 신청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수시인출형 월지급금은 농지연금 가입시 인출가능 총액을 제외한 후 산출하게 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자필서명

12

경영이양형의 경우 담보농지는 어떻게 합니까?

- ☐ 기간형 농지연금 중 경영이양형으로 가입한 담보농지는 연금지급기간 종료 후 공사에서 시행하는 매입시점 기준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적합한 경우 매도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담보농지 매매계약 체결(약정해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담보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농지연금채무를 정산할 수 없거나 농지연금채무 전부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농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임의경매를 통한 매각)으로 연금채무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 ☐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매매계약시 공사에서 담보농지를 매입하는 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 ☐ 농지연금채무액은 담보농지 매매(매각)대금과 상계하게 됩니다. 만약 농지처분금액(경매낙찰금액)으로 농지연금채무액을 상환하고 남으면 농지연금수급자가 돌려받고 농지처분금액(경매낙찰금액)으로 농지연

(별지 제1호 첨부 서식 2-1)

농지연금지급산출표(고정금리 2.0%, 종신정액형)

(20 년 월 일 기준)

※ 이 예시표는 상담용으로 실제 약정시에는 담보농지가격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신청인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배우자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농지가격	100,000,000원	월지급금	377,140원
최초지급 (예정)월	년 월	월지급금 지급일	매월 15일
지급방식	☒ 종신형 (종신정액형)	☐ 기간형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년 월 ~ 년 월)

※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배우자승계 동의 여부에 따라 귀하/배우자 연령인
_____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가입자 연령기준으로 산출)

※ 예시표는 가입자 연령 65세, 농지 공시지가 1억원 기준 (세부기준 표 참조)

- ▶ 88세(기대여명)때 농지연금채무액은 149백만원이며 예상농지가격은 196백만원입니다. 채무액 상환 시 현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사는 담보농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며, 채무액보다 경매 낙찰가액이 높으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이외에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세)	월지급금		위험부담금	이자	농지연금 채무액	예상농지가격
	월지급금	년합계액				
65	377,140	4,525,680	12,316	48,970	4,586,966	102,850,000
66	377,140	4,525,680	35,461	140,958	9,289,065	105,781,225
67	377,140	4,525,680	59,186	235,254	14,109,185	108,795,990
68	377,140	4,525,680	83,506	331,919	19,050,290	111,896,676
69	377,140	4,525,680	108,439	431,007	24,115,416	115,085,731
70	377,140	4,525,680	133,993	532,588	29,307,677	118,365,674
71	377,140	4,525,680	160,193	636,713	34,630,263	121,739,096
72	377,140	4,525,680	187,050	743,453	40,086,446	125,208,660
73	377,140	4,525,680	214,579	852,875	45,679,580	128,777,107
74	377,140	4,525,680	242,801	965,040	51,413,101	132,447,255
75	377,140	4,525,680	271,731	1,080,022	57,290,534	136,222,001
76	377,140	4,525,680	301,387	1,197,890	63,315,491	140,104,328
77	377,140	4,525,680	331,787	1,318,716	69,491,674	144,097,302
78	377,140	4,525,680	362,951	1,442,575	75,822,880	148,204,075
79	377,140	4,525,680	394,897	1,569,542	82,312,999	152,427,891
80	377,140	4,525,680	427,643	1,699,698	88,966,020	156,772,086
81	377,140	4,525,680	461,212	1,833,119	95,786,031	161,240,090
82	377,140	4,525,680	495,623	1,969,889	102,777,223	165,835,433
83	377,140	4,525,680	530,900	2,110,092	109,943,895	170,561,743
84	377,140	4,525,680	567,060	2,253,816	117,290,451	175,422,752
85	377,140	4,525,680	604,129	2,401,145	124,821,405	180,422,301
86	377,140	4,525,680	642,128	2,552,172	132,541,385	185,564,336
87	377,140	4,525,680	681,079	2,706,990	140,455,134	190,852,920
88	377,140	4,525,680	721,010	2,865,696	148,567,520	196,292,228
89	377,140	4,525,680	761,945	3,028,383	156,883,528	201,886,557
90	377,140	4,525,680	803,906	3,195,155	165,408,269	207,640,323
91	377,140	4,525,680	846,918	3,366,114	174,146,981	213,558,073
92	377,140	4,525,680	891,011	3,541,362	183,105,034	219,644,478
93	377,140	4,525,680	936,210	3,721,008	192,287,932	225,904,345
94	377,140	4,525,680	982,545	3,905,165	201,701,322	232,342,619
95	377,140	4,525,680	1,030,042	4,093,944	211,350,988	238,964,384
96	377,140	4,525,680	1,078,729	4,287,462	221,242,859	245,774,869
97	377,140	4,525,680	1,128,642	4,485,837	231,383,018	252,779,453
98	377,140	4,525,680	1,179,805	4,689,188	241,777,691	259,983,667
99	377,140	4,525,680	1,232,255	4,897,647	252,433,273	267,393,201
100	377,140	4,525,680	1,286,019	5,111,338	263,356,310	275,013,908
합계	162,924,480		20,189,088	80,242,742	263,356,310	275,013,908

* 기준 : 기대이율3.65%, 농지가격상승률2.85%, 2020년생명표, 위험부담금요율0.5%,
실제대출이율(고정금리 2.0%), 배우자승계동의

(별지 제1호 첨부 서식 2-2)

농지연금지급산출표(변동금리 3.65%, 종신정액형)

(20 년 월 일 기준)

※ 이 예시표는 상담용으로 실제 약정시에는 담보농지가격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신청인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배우자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농지가격	100,000,000원	월지급금	377,140원
최초지급 (예정)월	년 월	월지급금 지급일	매월 15일
지급방식	☒ 종신형 (종신정액형)	기간형 ☐ 5년 ☐ 10년 ☐ 15년 (지급기간) (년 월 ~ 년 월)	

※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배우자승계 동의 여부에 따라 귀하/배우자 연령인 _____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가입자 연령기준으로 산출)

※ 예시표는 가입자 연령 65세, 농지 공시지가 1억원 기준 (세부기준 표 참조)

- ▶ 88세(기대여명)때 농지연금채무액은 185백만원이며 예상농지가격은 196백만원입니다. 채무액 상환 시 현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사는 담보농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며, 채무액보다 경매 낙찰가액이 높으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이외에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세)	월지급금		위험부담금	이자	농지연금 채무액	예상농지가격
	월지급금	년합계액				
65	377,140	4,525,680	12,378	89,156	4,627,214	102,850,000
66	377,140	4,525,680	35,900	258,505	9,447,299	105,781,225
67	377,140	4,525,680	60,401	434,919	14,468,299	108,795,990
68	377,140	4,525,680	85,923	618,685	19,698,587	111,896,676
69	377,140	4,525,680	112,507	810,109	25,146,883	115,085,731
70	377,140	4,525,680	140,204	1,009,514	30,822,281	118,365,674
71	377,140	4,525,680	169,054	1,217,227	36,734,242	121,739,096
72	377,140	4,525,680	199,102	1,433,605	42,892,629	125,208,660
73	377,140	4,525,680	230,406	1,658,993	49,307,708	128,777,107
74	377,140	4,525,680	263,016	1,893,781	55,990,185	132,447,255
75	377,140	4,525,680	296,984	2,138,358	62,951,207	136,222,001
76	377,140	4,525,680	332,368	2,393,126	70,202,381	140,104,328
77	377,140	4,525,680	369,227	2,658,514	77,755,802	144,097,302
78	377,140	4,525,680	407,622	2,934,962	85,624,066	148,204,075
79	377,140	4,525,680	447,618	3,222,936	93,820,300	152,427,891
80	377,140	4,525,680	489,282	3,522,913	102,358,175	156,772,086
81	377,140	4,525,680	532,681	3,835,393	111,251,929	161,240,090
82	377,140	4,525,680	577,889	4,160,897	120,516,395	165,835,433
83	377,140	4,525,680	624,982	4,499,970	130,167,027	170,561,743
84	377,140	4,525,680	674,039	4,853,178	140,219,924	175,422,752
85	377,140	4,525,680	725,139	5,221,107	150,691,850	180,422,301
86	377,140	4,525,680	778,370	5,604,372	161,600,272	185,564,336
87	377,140	4,525,680	833,822	6,003,614	172,963,388	190,852,920
88	377,140	4,525,680	891,582	6,419,496	184,800,146	196,292,228
89	377,140	4,525,680	951,748	6,852,713	197,130,287	201,886,557
90	377,140	4,525,680	1,014,424	7,303,988	209,974,379	207,640,323
91	377,140	4,525,680	1,079,712	7,774,073	223,353,844	213,558,073
92	377,140	4,525,680	1,147,724	8,263,753	237,291,001	219,644,478
93	377,140	4,525,680	1,218,567	8,773,840	251,809,088	225,904,345
94	377,140	4,525,680	1,292,366	9,305,195	266,932,329	232,342,619
95	377,140	4,525,680	1,369,240	9,858,694	282,685,943	238,964,384
96	377,140	4,525,680	1,449,319	10,435,264	299,096,206	245,774,869
97	377,140	4,525,680	1,532,735	11,035,870	316,190,491	252,779,453
98	377,140	4,525,680	1,619,630	11,661,510	333,997,311	259,983,667
99	377,140	4,525,680	1,710,142	12,313,226	352,546,359	267,393,201
100	377,140	4,525,680	1,804,431	12,992,110	371,868,580	275,013,908
합계		162,924,480	25,480,534	183,463,566	371,868,580	275,013,908

* 기준 : 기대이율3.65%, 농지가격상승률2.85%, 2020년생명표, 위험부담금요율0.5%,
실제대출이율(변동금리 기대이율 3.65%적용), 배우자승계동의

(별지 제1호 첨부 서식 2-3)

농지연금지급산출표(고정금리 2.0%, 종신정액형(10%우대))

(20 년 월 일 기준)

※ 이 예시표는 상담용으로 실제 약정시에는 담보농지가격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신청인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배우자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농지가격	100,000,000원	월지급금	414,850원
최초지급 (예정)월	년 월	월지급금 지급일	매월 15일
지급방식	☒ 종신형 (종신정액형, 10%우대)	☐ 기간형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년 월 ~ 년 월)

※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배우자승계 동의 여부에 따라 귀하/배우자 연령인
_____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가입자 연령기준으로 산출)

※ 예시표는 가입자 연령 65세, 농지 공시지가 1억원 기준 (세부기준 표 참조)

- ▶ 88세(기대여명)때 농지연금채무액은 163백만원이며 예상농지가격은 196백만원입니다. 채무액 상환 시 현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사는 담보농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며, 채무액보다 경매 낙찰가액이 높으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이외에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세)	월지급금		위험부담금	이자	농지연금 채무액	예상농지가격
	월지급금	년합계액				
65	414,850	4,978,200	13,548	53,866	5,045,614	102,850,000
66	414,850	4,978,200	39,006	155,052	10,217,872	105,781,225
67	414,850	4,978,200	65,105	258,779	15,519,956	108,795,990
68	414,850	4,978,200	91,858	365,107	20,955,121	111,896,676
69	414,850	4,978,200	119,279	474,106	26,526,706	115,085,731
70	414,850	4,978,200	147,395	585,841	32,238,142	118,365,674
71	414,850	4,978,200	176,213	700,380	38,092,935	121,739,096
72	414,850	4,978,200	205,755	817,792	44,094,682	125,208,660
73	414,850	4,978,200	236,038	938,154	50,247,074	128,777,107
74	414,850	4,978,200	267,080	1,061,536	56,553,890	132,447,255
75	414,850	4,978,200	298,904	1,188,013	63,019,007	136,222,001
76	414,850	4,978,200	331,525	1,317,666	69,646,398	140,104,328
77	414,850	4,978,200	364,965	1,450,574	76,440,137	144,097,302
78	414,850	4,978,200	399,242	1,586,820	83,404,399	148,204,075
79	414,850	4,978,200	434,382	1,726,484	90,543,465	152,427,891
80	414,850	4,978,200	470,405	1,869,652	97,861,722	156,772,086
81	414,850	4,978,200	507,330	2,016,413	105,363,665	161,240,090
82	414,850	4,978,200	545,184	2,166,860	113,053,909	165,835,433
83	414,850	4,978,200	583,986	2,321,081	120,937,176	170,561,743
84	414,850	4,978,200	623,762	2,479,176	129,018,314	175,422,752
85	414,850	4,978,200	664,538	2,641,236	137,302,288	180,422,301
86	414,850	4,978,200	706,336	2,807,363	145,794,187	185,564,336
87	414,850	4,978,200	749,184	2,977,665	154,499,236	190,852,920
88	414,850	4,978,200	793,106	3,152,237	163,422,779	196,292,228
89	414,850	4,978,200	838,131	3,331,193	172,570,303	201,886,557
90	414,850	4,978,200	884,290	3,514,640	181,947,433	207,640,323
91	414,850	4,978,200	931,600	3,702,694	191,559,927	213,558,073
92	414,850	4,978,200	980,104	3,895,463	201,413,694	219,644,478
93	414,850	4,978,200	1,029,824	4,093,074	211,514,792	225,904,345
94	414,850	4,978,200	1,080,792	4,295,646	221,869,430	232,342,619
95	414,850	4,978,200	1,133,037	4,503,299	232,483,966	238,964,384
96	414,850	4,978,200	1,186,595	4,716,169	243,364,930	245,774,869
97	414,850	4,978,200	1,241,494	4,934,376	254,519,000	252,779,453
98	414,850	4,978,200	1,297,778	5,158,064	265,953,042	259,983,667
99	414,850	4,978,200	1,355,471	5,387,366	277,674,079	267,393,201
100	414,850	4,978,200	1,414,610	5,622,424	289,689,313	275,013,908
합계	179,215,200		22,207,852	88,266,261	289,689,313	275,013,908

* 기준 : 기대이율3.65%, 농지가격상승률2.85%, 2020년생명표, 위험부담금요율0.5%,
실제대출이율(고정금리 2.0%), 배우자승계동의

(별지 제1호 첨부 서식 2-4)

농지연금지급산출표(변동금리 3.65%, 종신정액형(10% 우대))

(20 년 월 일 기준)

※ 이 예시표는 상담용으로 실제 약정시에는 담보농지가격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신청인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배우자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농지가격	100,000,000원	월지급금	414,850원
최초지급 (예정)월	년 월	월지급금 지급일	매월 15일
지급방식	☒ 종신형 (종신정액형 10%우대)	기간형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년 월 ~ 년 월)

※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배우자승계 동의 여부에 따라 귀하/배우자 연령인 _____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가입자 연령기준으로 산출)

※ 예시표는 가입자 연령 65세, 농지 공시지가 1억원 기준 (세부기준 표 참조)

- ▶ 88세(기대여명)때 농지연금채무액은 203백만원이며 예상농지가격은 196백만원입니다. 채무액 상환 시 현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사는 담보농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며, 채무액보다 경매 낙찰가액이 높으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이외에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세)	월지급금		위험부담금	이자	농지연금 채무액	예상농지가격
	월지급금	년합계액				
65	414,850	4,978,200	13,616	98,071	5,089,887	102,850,000
66	414,850	4,978,200	39,489	284,355	10,391,931	105,781,225
67	414,850	4,978,200	66,438	478,406	15,914,975	108,795,990
68	414,850	4,978,200	94,515	680,547	21,668,237	111,896,676
69	414,850	4,978,200	123,761	891,112	27,661,310	115,085,731
70	414,850	4,978,200	154,223	1,110,455	33,904,188	118,365,674
71	414,850	4,978,200	185,955	1,338,942	40,407,285	121,739,096
72	414,850	4,978,200	219,013	1,576,950	47,181,448	125,208,660
73	414,850	4,978,200	253,448	1,824,879	54,237,975	128,777,107
74	414,850	4,978,200	289,317	2,083,142	61,588,634	132,447,255
75	414,850	4,978,200	326,682	2,352,170	69,245,686	136,222,001
76	414,850	4,978,200	365,605	2,632,413	77,221,904	140,104,328
77	414,850	4,978,200	406,149	2,924,337	85,530,590	144,097,302
78	414,850	4,978,200	448,383	3,228,430	94,185,603	148,204,075
79	414,850	4,978,200	492,377	3,545,199	103,201,379	152,427,891
80	414,850	4,978,200	538,205	3,875,170	112,592,954	156,772,086
81	414,850	4,978,200	585,946	4,218,894	122,375,994	161,240,090
82	414,850	4,978,200	635,675	4,576,947	132,566,816	165,835,433
83	414,850	4,978,200	687,476	4,949,925	143,182,417	170,561,743
84	414,850	4,978,200	741,439	5,338,447	154,240,503	175,422,752
85	414,850	4,978,200	797,650	5,743,166	165,759,519	180,422,301
86	414,850	4,978,200	856,201	6,164,754	177,758,674	185,564,336
87	414,850	4,978,200	917,193	6,603,916	190,257,983	190,852,920
88	414,850	4,978,200	980,733	7,061,380	203,278,296	196,292,228
89	414,850	4,978,200	1,046,916	7,537,917	216,841,329	201,886,557
90	414,850	4,978,200	1,115,858	8,034,314	230,969,701	207,640,323
91	414,850	4,978,200	1,187,675	8,551,403	245,686,979	213,558,073
92	414,850	4,978,200	1,262,489	9,090,045	261,017,713	219,644,478
93	414,850	4,978,200	1,340,416	9,651,140	276,987,469	225,904,345
94	414,850	4,978,200	1,421,592	10,235,619	293,622,880	232,342,619
95	414,850	4,978,200	1,506,154	10,844,468	310,951,702	238,964,384
96	414,850	4,978,200	1,594,239	11,478,691	329,002,832	245,774,869
97	414,850	4,978,200	1,685,997	12,139,348	347,806,377	252,779,453
98	414,850	4,978,200	1,781,579	12,827,547	367,393,703	259,983,667
99	414,850	4,978,200	1,881,144	13,544,427	387,797,474	267,393,201
100	414,850	4,978,200	1,984,859	14,291,194	409,051,727	275,013,908
합계	179,215,200		28,028,407	201,808,120	409,051,727	275,013,908

* 기준 : 기대이율3.65%, 농지가격상승률2.85%, 2020년생명표, 위험부담금요율0.5%,
실제대출이율(변동금리 기대이율 3.65%적용), 배우자승계동의

(별지 제1호 첨부 서식 2-5)

농지연금지급산출표(고정금리 2.0%, 종신정액형(5%우대))

(20 년 월 일 기준)

※ 이 예시표는 상담용으로 실제 약정시에는 담보농지가격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신청인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배우자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농지가격	100,000,000원	월지급금	395,990원
최초지급 (예정)월	년 월	월지급금 지급일	매월 15일
지급방식	☒ 종신형 (종신정액형 5%우대)	☐ 기간형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년 월 ~ 년 월)

※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배우자승계 동의 여부에 따라 귀하/배우자 연령인
_____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가입자 연령기준으로 산출)

※ 예시표는 가입자 연령 65세, 농지 공시지가 1억원 기준 (세부기준 표 참조)

- ▶ 88세(기대여명)때 농지연금채무액은 156백만원이며 예상농지가격은 196백만원입니다. 채무액 상환 시 현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사는 담보농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며, 채무액보다 경매 낙찰가액이 높으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이외에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세)	월지급금		위험부담금	이자	농지연금 채무액	예상농지가격
	월지급금	년합계액				
65	395,990	4,751,880	12,931	51,417	4,816,228	102,850,000
66	395,990	4,751,880	37,233	148,002	9,753,343	105,781,225
67	395,990	4,751,880	62,145	247,013	14,814,381	108,795,990
68	395,990	4,751,880	87,681	348,509	20,002,451	111,896,676
69	395,990	4,751,880	113,857	452,553	25,320,741	115,085,731
70	395,990	4,751,880	140,694	559,205	30,772,520	118,365,674
71	395,990	4,751,880	168,202	668,538	36,361,140	121,739,096
72	395,990	4,751,880	196,400	780,613	42,090,033	125,208,660
73	395,990	4,751,880	225,306	895,503	47,962,722	128,777,107
74	395,990	4,751,880	254,938	1,013,277	53,982,817	132,447,255
75	395,990	4,751,880	285,315	1,134,003	60,154,015	136,222,001
76	395,990	4,751,880	316,451	1,257,762	66,480,108	140,104,328
77	395,990	4,751,880	348,373	1,384,629	72,964,990	144,097,302
78	395,990	4,751,880	381,091	1,514,678	79,612,639	148,204,075
79	395,990	4,751,880	414,634	1,647,992	86,427,145	152,427,891
80	395,990	4,751,880	449,015	1,784,652	93,412,692	156,772,086
81	395,990	4,751,880	484,265	1,924,743	100,573,580	161,240,090
82	395,990	4,751,880	520,396	2,068,350	107,914,206	165,835,433
83	395,990	4,751,880	557,436	2,215,558	115,439,080	170,561,743
84	395,990	4,751,880	595,404	2,366,464	123,152,828	175,422,752
85	395,990	4,751,880	634,325	2,521,158	131,060,191	180,422,301
86	395,990	4,751,880	674,223	2,679,737	139,166,031	185,564,336
87	395,990	4,751,880	715,123	2,842,292	147,475,326	190,852,920
88	395,990	4,751,880	757,051	3,008,929	155,993,186	196,292,228
89	395,990	4,751,880	800,029	3,179,750	164,724,845	201,886,557
90	395,990	4,751,880	844,086	3,354,856	173,675,667	207,640,323
91	395,990	4,751,880	889,251	3,534,359	182,851,157	213,558,073
92	395,990	4,751,880	935,548	3,718,366	192,256,951	219,644,478
93	395,990	4,751,880	983,003	3,906,994	201,898,828	225,904,345
94	395,990	4,751,880	1,031,654	4,100,355	211,782,717	232,342,619
95	395,990	4,751,880	1,081,527	4,298,569	221,914,693	238,964,384
96	395,990	4,751,880	1,132,650	4,501,758	232,300,981	245,774,869
97	395,990	4,751,880	1,185,055	4,710,048	242,947,964	252,779,453
98	395,990	4,751,880	1,238,777	4,923,564	253,862,185	259,983,667
99	395,990	4,751,880	1,293,847	5,142,442	265,050,354	267,393,201
100	395,990	4,751,880	1,350,298	5,366,813	276,519,345	275,013,908
합계	171,067,680		21,198,214	84,253,451	276,519,345	275,013,908

* 기준 : 기대이율3.65%, 농지가격상승률2.85%, 2020년생명표, 위험부담금요율0.5%,
실제대출이율(고정금리 2.0%), 배우자승계동의

(별지 제1호 첨부 서식 2-6)

농지연금지급산출표(변동금리 3.65%, 종신정액형(5% 우대))

(20 년 월 일 기준)

※ 이 예시표는 상담용으로 실제 약정시에는 담보농지가격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신청인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배우자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농지가격	100,000,000원	월지급금	395,990원
최초지급 (예정)월	년 월	월지급금 지급일	매월 15일
지급방식	☒ 종신형 (종신정액형 5%우대)	기간형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년 월 ~ 년 월)	

※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배우자승계 동의 여부에 따라 귀하/배우자 연령인 _____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가입자 연령기준으로 산출)

※ 예시표는 가입자 연령 65세, 농지 공시지가 1억원 기준 (세부기준 표 참조)

- ▶ 88세(기대여명)때 농지연금채무액은 194백만원이며 예상농지가격은 196백만원입니다. 채무액 상환 시 현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사는 담보농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며, 채무액보다 경매 낙찰가액이 높으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이외에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세)	월지급금		위험부담금	이자	농지연금 채무액	예상농지가격
	월지급금	년합계액				
65	395,990	4,751,880	12,994	93,611	4,858,485	102,850,000
66	395,990	4,751,880	37,694	271,426	9,919,485	105,781,225
67	395,990	4,751,880	63,417	456,657	15,191,439	108,795,990
68	395,990	4,751,880	90,215	649,607	20,683,141	111,896,676
69	395,990	4,751,880	118,132	850,600	26,403,753	115,085,731
70	395,990	4,751,880	147,210	1,059,969	32,362,812	118,365,674
71	395,990	4,751,880	177,501	1,278,069	38,570,262	121,739,096
72	395,990	4,751,880	209,055	1,505,256	45,036,453	125,208,660
73	395,990	4,751,880	241,923	1,741,915	51,772,171	128,777,107
74	395,990	4,751,880	276,164	1,988,438	58,788,653	132,447,255
75	395,990	4,751,880	311,828	2,245,235	66,097,596	136,222,001
76	395,990	4,751,880	348,982	2,512,738	73,711,196	140,104,328
77	395,990	4,751,880	387,684	2,791,389	81,642,149	144,097,302
78	395,990	4,751,880	427,998	3,081,657	89,903,684	148,204,075
79	395,990	4,751,880	469,993	3,384,023	98,509,580	152,427,891
80	395,990	4,751,880	513,737	3,698,993	107,474,190	156,772,086
81	395,990	4,751,880	559,306	4,027,094	116,812,470	161,240,090
82	395,990	4,751,880	606,774	4,368,867	126,539,991	165,835,433
83	395,990	4,751,880	656,222	4,724,888	136,672,981	170,561,743
84	395,990	4,751,880	707,729	5,095,749	147,228,339	175,422,752
85	395,990	4,751,880	761,384	5,482,067	158,223,670	180,422,301
86	395,990	4,751,880	817,274	5,884,488	169,677,312	185,564,336
87	395,990	4,751,880	875,496	6,303,685	181,608,373	190,852,920
88	395,990	4,751,880	936,143	6,740,354	194,036,750	196,292,228
89	395,990	4,751,880	999,321	7,195,223	206,983,174	201,886,557
90	395,990	4,751,880	1,065,129	7,669,054	220,469,237	207,640,323
91	395,990	4,751,880	1,133,681	8,162,634	234,517,432	213,558,073
92	395,990	4,751,880	1,205,089	8,676,789	249,151,190	219,644,478
93	395,990	4,751,880	1,279,476	9,212,374	264,394,920	225,904,345
94	395,990	4,751,880	1,356,965	9,770,286	280,274,051	232,342,619
95	395,990	4,751,880	1,437,679	10,351,450	296,815,060	238,964,384
96	395,990	4,751,880	1,521,759	10,956,840	314,045,539	245,774,869
97	395,990	4,751,880	1,609,346	11,587,465	331,994,230	252,779,453
98	395,990	4,751,880	1,700,584	12,244,374	350,691,068	259,983,667
99	395,990	4,751,880	1,795,623	12,928,665	370,167,236	267,393,201
100	395,990	4,751,880	1,894,620	13,641,479	390,455,215	275,013,908
합계	171,067,680		26,754,127	192,633,408	390,455,215	275,013,908

* 기준 : 기대이율3.65%, 농지가격상승률2.85%, 2020년생명표, 위험부담금요율0.5%,
실제대출이율(변동금리 기대이율 3.65%적용), 배우자승계동의

(별지 제1호 첨부 서식 2-7)

농지연금지급산출표(고정금리 2.0%, 전후후박형)

(20 년 월 일 기준)

※ 이 예시표는 상담용으로 실제 약정시에는 담보농지가격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신청인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배우자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농지가격	100,000,000원	월지급금 (전/후)	453,210원/317,240원
최초지급 (예정)월	년 월	월지급금 지급일	매월 15일
지급방식	☒ 종신행 (전후후박형)	기간형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년 월 ~ 년 월)	

※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배우자승계 동의 여부에 따라 귀하/배우자 연령인 _____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가입자 연령기준으로 산출)

※ 예시표는 가입자 연령 65세, 농지 공시지가 1억원 기준 (세부기준 표 참조)

- ▶ 88세(기대여명)때 농지연금채무액은 151백만원이며 예상농지가격은 196백만원입니다. 채무액 상환 시 현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사는 담보농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며, 채무액보다 경매 낙찰가액이 높으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이외에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세)	월지급금		위험부담금	이자	농지연금 채무액	예상농지가격
	월지급금	년합계액				
65	453,210	5,438,520	14,802	58,848	5,512,170	102,850,000
66	453,210	5,438,520	42,615	169,389	11,162,694	105,781,225
67	453,210	5,438,520	71,125	282,709	16,955,048	108,795,990
68	453,210	5,438,520	100,352	398,870	22,892,790	111,896,676
69	453,210	5,438,520	130,311	517,946	28,979,567	115,085,731
70	453,210	5,438,520	161,023	640,012	35,219,122	118,365,674
71	453,210	5,438,520	192,507	765,140	41,615,289	121,739,096
72	453,210	5,438,520	224,781	893,411	48,172,001	125,208,660
73	453,210	5,438,520	257,863	1,024,903	54,893,287	128,777,107
74	453,210	5,438,520	291,777	1,159,693	61,783,277	132,447,255
75	317,240	3,806,880	322,101	1,280,210	67,192,468	136,222,001
76	317,240	3,806,880	349,392	1,388,687	72,737,427	140,104,328
77	317,240	3,806,880	377,371	1,499,887	78,421,565	144,097,302
78	317,240	3,806,880	406,050	1,613,879	84,248,374	148,204,075
79	317,240	3,806,880	435,451	1,730,732	90,221,437	152,427,891
80	317,240	3,806,880	465,591	1,850,517	96,344,425	156,772,086
81	317,240	3,806,880	496,484	1,973,309	102,621,098	161,240,090
82	317,240	3,806,880	528,156	2,099,184	109,055,318	165,835,433
83	317,240	3,806,880	560,619	2,228,215	115,651,032	170,561,743
84	317,240	3,806,880	593,900	2,360,489	122,412,301	175,422,752
85	317,240	3,806,880	628,015	2,496,081	129,343,277	180,422,301
86	317,240	3,806,880	662,987	2,635,077	136,448,221	185,564,336
87	317,240	3,806,880	698,836	2,777,562	143,731,499	190,852,920
88	317,240	3,806,880	735,586	2,923,622	151,197,587	196,292,228
89	317,240	3,806,880	773,255	3,073,349	158,851,071	201,886,557
90	317,240	3,806,880	811,875	3,226,833	166,696,659	207,640,323
91	317,240	3,806,880	851,462	3,384,172	174,739,173	213,558,073
92	317,240	3,806,880	892,040	3,545,459	182,983,552	219,644,478
93	317,240	3,806,880	933,640	3,710,795	191,434,867	225,904,345
94	317,240	3,806,880	976,284	3,880,279	200,098,310	232,342,619
95	317,240	3,806,880	1,019,995	4,054,019	208,979,204	238,964,384
96	317,240	3,806,880	1,064,807	4,232,118	218,083,009	245,774,869
97	317,240	3,806,880	1,110,740	4,414,689	227,415,318	252,779,453
98	317,240	3,806,880	1,157,828	4,601,843	236,981,869	259,983,667
99	317,240	3,806,880	1,206,099	4,793,693	246,788,541	267,393,201
100	317,240	3,806,880	1,255,579	4,990,356	256,841,356	275,013,908
합계		153,364,080	20,801,299	82,675,977	256,841,356	275,013,908

* 기준 : 기대이율3.65%, 농지가격상승률2.85%, 2020년생명표, 위험부담금요율0.5%,
실제대출이율(고정금리 2.0%), 배우자승계동의

(별지 제1호 첨부 서식 2-8)

농지연금지급산출표(변동금리 3.65%, 전후후박형)

(20 년 월 일 기준)

※ 이 예시표는 상담용으로 실제 약정시에는 담보농지가격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신청인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배우자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농지가격	100,000,000원	월지급금 (전/후)	453,210원/317,240원
최초지급 (예정)월	년 월	월지급금 지급일	매월 15일
지급방식	☒ 종신행 (전후후박형)	기간형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년 월 ~ 년 월)

※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배우자승계 동의 여부에 따라 귀하/배우자 연령인 _____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가입자 연령기준으로 산출)

※ 예시표는 가입자 연령 65세, 농지 공시지가 1억원 기준 (세부기준 표 참조)

- ▶ 88세(기대여명)때 농지연금채무액은 191백만원이며 예상농지가격은 196백만원입니다 채무액 상환 시 현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사는 담보 농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며, 채무액보다 경매 낙찰가액이 높으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이외에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세)	월지급금		위험부담금	이자	농지연금 채무액	예상농지가격
	월지급금	년합계액				
65	453,210	5,438,520	14,876	107,137	5,560,533	102,850,000
66	453,210	5,438,520	43,138	310,649	11,352,840	105,781,225
67	453,210	5,438,520	72,583	522,643	17,386,586	108,795,990
68	453,210	5,438,520	103,254	743,477	23,671,837	111,896,676
69	453,210	5,438,520	135,205	973,511	30,219,073	115,085,731
70	453,210	5,438,520	168,484	1,213,136	37,039,213	118,365,674
71	453,210	5,438,520	203,152	1,462,747	44,143,632	121,739,096
72	453,210	5,438,520	239,265	1,722,763	51,544,180	125,208,660
73	453,210	5,438,520	276,884	1,993,620	59,253,204	128,777,107
74	453,210	5,438,520	316,068	2,275,765	67,283,557	132,447,255
75	317,240	3,806,880	352,422	2,537,526	73,980,385	136,222,001
76	317,240	3,806,880	386,464	2,782,623	80,956,352	140,104,328
77	317,240	3,806,880	421,924	3,037,941	88,223,097	144,097,302
78	317,240	3,806,880	458,865	3,303,899	95,792,741	148,204,075
79	317,240	3,806,880	497,342	3,580,940	103,677,903	152,427,891
80	317,240	3,806,880	537,424	3,869,532	111,891,739	156,772,086
81	317,240	3,806,880	579,174	4,170,152	120,447,945	161,240,090
82	317,240	3,806,880	622,667	4,483,303	129,360,795	165,835,433
83	317,240	3,806,880	667,974	4,809,510	138,645,159	170,561,743
84	317,240	3,806,880	715,166	5,149,310	148,316,515	175,422,752
85	317,240	3,806,880	764,330	5,503,275	158,391,000	180,422,301
86	317,240	3,806,880	815,540	5,871,995	168,885,415	185,564,336
87	317,240	3,806,880	868,883	6,256,084	179,817,262	190,852,920
88	317,240	3,806,880	924,452	6,656,181	191,204,775	196,292,228
89	317,240	3,806,880	982,336	7,072,957	203,066,948	201,886,557
90	317,240	3,806,880	1,042,633	7,507,103	215,423,564	207,640,323
91	317,240	3,806,880	1,105,446	7,959,348	228,295,238	213,558,073
92	317,240	3,806,880	1,170,875	8,430,442	241,703,435	219,644,478
93	317,240	3,806,880	1,239,028	8,921,171	255,670,514	225,904,345
94	317,240	3,806,880	1,310,026	9,432,357	270,219,777	232,342,619
95	317,240	3,806,880	1,383,986	9,964,852	285,375,495	238,964,384
96	317,240	3,806,880	1,461,024	10,519,540	301,162,939	245,774,869
97	317,240	3,806,880	1,541,272	11,097,349	317,608,440	252,779,453
98	317,240	3,806,880	1,624,870	11,699,245	334,739,435	259,983,667
99	317,240	3,806,880	1,711,950	12,326,226	352,584,491	267,393,201
100	317,240	3,806,880	1,802,657	12,979,344	371,173,372	275,013,908
합계	153,364,080		26,561,639	191,247,653	371,173,372	275,013,908

* 기준 : 기대이율3.65%, 농지가격상승률2.85%, 2020년생명표, 위험부담금요율0.5%,
실제대출이율(변동금리 기대이율 3.65%적용), 배우자승계동의

(별지 제1호 첨부 서식 2-9)

농지연금지급산출표(고정금리 2.0%, 수시인출형)

(20 년 월 일 기준)

※ 이 예시표는 상담용으로 실제 약정시에는 담보농지가격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신청인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배우자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농지가격	100,000,000원	월지급금 (수시인출금)	266,060원 (25,000,000원)
최초지급 (예정)월	년 월	월지급금 지급일	매월 15일
지급방식	☒ 종신행	기간형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년 월 ~ 년 월)

※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배우자승계 동의 여부에 따라 귀하/배우자 연령인 _____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가입자 연령기준으로 산출)

※ 예시표는 가입자 연령 65세, 농지 공시지가 1억원 기준 (세부기준 표 참조)

- ▶ 88세(기대여명)때 농지연금채무액은 150백만원이며 예상농지가격은 196백만원입니다. 채무액 상환 시 현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사는 담보농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며, 채무액보다 경매 낙찰가액이 높으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이외에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세)	월지급금		위험부담금	이자	농지연금 채무액	예상농지가격
	월지급금	년합계액				
65	266,060	25,000,000	3,192,720	134,830	535,902	28,863,452
66	266,060		3,192,720	154,323	613,380	32,823,875
67	266,060		3,192,720	174,306	692,802	36,883,703
68	266,060		3,192,720	194,792	774,220	41,045,435
69	266,060		3,192,720	215,790	857,681	45,311,626
70	266,060		3,192,720	237,318	943,237	49,684,901
71	266,060		3,192,720	259,381	1,030,940	54,167,942
72	266,060		3,192,720	282,003	1,120,844	58,763,509
73	266,060		3,192,720	305,189	1,213,004	63,474,422
74	266,060		3,192,720	328,960	1,307,478	68,303,580
75	266,060		3,192,720	353,325	1,404,324	73,253,949
76	266,060		3,192,720	378,304	1,503,600	78,328,573
77	266,060		3,192,720	403,909	1,605,369	83,530,571
78	266,060		3,192,720	430,157	1,709,691	88,863,139
79	266,060		3,192,720	457,066	1,816,633	94,329,558
80	266,060		3,192,720	484,644	1,926,257	99,933,179
81	266,060		3,192,720	512,920	2,038,632	105,677,451
82	266,060		3,192,720	541,903	2,153,830	111,565,904
83	266,060		3,192,720	571,616	2,271,920	117,602,160
84	266,060		3,192,720	602,072	2,392,971	123,789,923
85	266,060		3,192,720	633,294	2,517,062	130,132,999
86	266,060		3,192,720	665,299	2,644,269	136,635,287
87	266,060		3,192,720	698,108	2,774,668	143,300,783
88	266,060		3,192,720	731,739	2,908,338	150,133,580
89	266,060		3,192,720	766,217	3,045,365	157,137,882
90	266,060		3,192,720	801,558	3,185,831	164,317,991
91	266,060		3,192,720	837,786	3,329,823	171,678,320
92	266,060		3,192,720	874,925	3,477,429	179,223,394
93	266,060		3,192,720	912,996	3,628,740	186,957,850
94	266,060		3,192,720	952,020	3,783,849	194,886,439
95	266,060		3,192,720	992,025	3,942,853	203,014,037
96	266,060		3,192,720	1,033,036	4,105,845	211,345,638
97	266,060		3,192,720	1,075,074	4,272,930	219,886,362
98	266,060		3,192,720	1,118,168	4,444,207	228,641,457
99	266,060		3,192,720	1,162,345	4,619,785	237,616,307
100	266,060		3,192,720	1,207,629	4,799,769	246,816,425
합계	114,937,920		21,485,027	85,393,478	246,816,425	275,013,908

* 기준 : 기대이율3.65%, 농지가격상승률2.85%, 2020년생명표, 위험부담금요율0.5%,
실제대출이율(고정금리 2.0%), 배우자승계동의

** 인출가능총액(26,000,000원)을 65세 1회차 월지급금과 함께 지급함을 가정

(별지 제1호 첨부 서식 2-10)

농지연금지급산출표(변동금리 3.65%, 수시인출형)

(20 년 월 일 기준)

※ 이 예시표는 상담용으로 실제 약정시에는 담보농지가격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신청인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배우자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농지가격	100,000,000원	월지급금	266,060원 (25,000,000원)
최초지급 (예정)월	년 월	월지급금 지급일	매월 15일
지급방식	☒ 종신행	기간형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년 월 ~ 년 월)

※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배우자승계 동의 여부에 따라 귀하/배우자 연령인 _____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가입자 연령기준으로 산출)

※ 예시표는 가입자 연령 65세, 농지 공시지가 1억원 기준 (세부기준 표 참조)

- ▶ 88세(기대여명)때 농지연금채무액은 197백만원이며 예상농지가격은 196백만원입니다. 채무액 상환 시 현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사는 담보농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며, 채무액보다 경매 낙찰가액이 높으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이외에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세)	월지급금		위험부담금	이자	농지연금 채무액	예상농지가격
	월지급금	년합계액				
65	266,060	25,000,000	3,192,720	135,809	977,876	29,306,405
66	266,060		3,192,720	157,700	1,135,486	33,792,311
67	266,060		3,192,720	180,502	1,299,668	38,465,201
68	266,060		3,192,720	204,255	1,470,694	43,332,870
69	266,060		3,192,720	228,998	1,648,847	48,403,435
70	266,060		3,192,720	254,773	1,834,425	53,685,353
71	266,060		3,192,720	281,623	2,027,740	59,187,436
72	266,060		3,192,720	309,591	2,229,114	64,918,861
73	266,060		3,192,720	338,724	2,438,880	70,889,185
74	266,060		3,192,720	369,072	2,657,389	77,108,366
75	266,060		3,192,720	400,685	2,885,006	83,586,777
76	266,060		3,192,720	433,617	3,122,112	90,335,226
77	266,060		3,192,720	467,921	3,369,100	97,364,967
78	266,060		3,192,720	503,654	3,626,384	104,687,725
79	266,060		3,192,720	540,876	3,894,391	112,315,712
80	266,060		3,192,720	579,649	4,173,572	120,261,653
81	266,060		3,192,720	620,040	4,464,388	128,538,801
82	266,060		3,192,720	662,116	4,767,325	137,160,962
83	266,060		3,192,720	705,944	5,082,891	146,142,517
84	266,060		3,192,720	751,598	5,411,608	155,498,443
85	266,060		3,192,720	799,155	5,754,030	165,244,348
86	266,060		3,192,720	848,696	6,110,723	175,396,487
87	266,060		3,192,720	900,300	6,482,285	185,971,792
88	266,060		3,192,720	954,057	6,869,334	196,987,903
89	266,060		3,192,720	1,010,053	7,272,516	208,463,192
90	266,060		3,192,720	1,068,383	7,692,502	220,416,797
91	266,060		3,192,720	1,129,146	8,129,996	232,868,659
92	266,060		3,192,720	1,192,440	8,585,727	245,839,546
93	266,060		3,192,720	1,258,374	9,060,453	259,351,093
94	266,060		3,192,720	1,327,056	9,554,966	273,425,835
95	266,060		3,192,720	1,398,601	10,070,092	288,087,248
96	266,060		3,192,720	1,473,126	10,606,690	303,359,784
97	266,060		3,192,720	1,550,760	11,165,654	319,268,918
98	266,060		3,192,720	1,631,627	11,747,917	335,841,182
99	266,060		3,192,720	1,715,870	12,354,448	353,104,220
100	266,060		3,192,720	1,803,619	12,986,266	371,086,825
합계	114,937,920		28,188,410	202,960,495	371,086,825	275,013,908

* 기준 : 기대이율3.65%, 농지가격상승률2.85%, 2020년생명표, 위험부담금요율0.5%,
실제대출이율(변동금리 기대이율 3.65%적용), 배우자승계동의

** 인출가능총액(26,000,000원)을 65세 1회차 월지급금과 함께 지급함을 가정

(별지 제1호 첨부 서식 2-11)

농지연금지급산출표(고정금리 2.0%, 기간정액형)

(20 년 월 일 기준)

※ 이 예시표는 상담용으로 실제 약정시에는 담보농지가격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신청인		1949년 1월 1일	만 73 세
배우자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농지가격	100,000,000원	월지급금	856,990원
최초지급 (예정)월	년 월	월지급금 지급일	매월 15일
지급방식	☐ 종신행	기간형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년 월 ~ 년 월)

※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배우자승계 동의 여부에 따라 귀하/배우자 연령인
_____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가입자 연령기준으로 산출)

※ 예시표는 가입자 연령 73세, 농지 공시지가 1억원 기준 (세부기준 표 참조)

- ▶ 89세(기대여명)때 농지연금채무액은 139백만원이며 예상농지가격은 161백만원입니다. 채무액 상환 시 현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사는 담보농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며, 채무액보다 경매 낙찰가액이 높으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이외에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세)	월지급금		위험부담금	이자	농지연금 채무액	예상농지가격
	월지급금	년합계액				
73	856,990	10,283,880	27,994	111,281	10,423,155	102,850,000
74	856,990	10,283,880	80,586	320,310	21,107,931	105,781,225
75	856,990	10,283,880	134,499	534,585	32,060,895	108,795,990
76	856,990	10,283,880	189,765	754,240	43,288,780	111,896,676
77	856,990	10,283,880	246,418	979,408	54,798,486	115,085,731
78	856,990	10,283,880	304,490	1,210,227	66,597,083	118,365,674
79	856,990	10,283,880	364,021	1,446,839	78,691,823	121,739,096
80	856,990	10,283,880	425,050	1,689,389	91,090,142	125,208,660
81	856,990	10,283,880	487,609	1,938,029	103,799,660	128,777,107
82	856,990	10,283,880	551,736	2,192,911	116,828,187	132,447,255
83	0	0	589,475	2,342,900	119,760,562	136,222,001
84	0	0	604,272	2,401,704	122,766,538	140,104,328
85	0	0	619,439	2,461,990	125,847,967	144,097,302
86	0	0	634,984	2,523,784	129,006,735	148,204,075
87	0	0	650,922	2,587,131	132,244,788	152,427,891
88	0	0	667,261	2,652,067	135,564,116	156,772,086
89	0	0	684,011	2,718,634	138,966,761	161,240,090
90	0	0	701,178	2,786,872	142,454,811	165,835,433
91	0	0	718,778	2,856,823	146,030,412	170,561,743
92	0	0	736,822	2,928,531	149,695,765	175,422,752
93	0	0	755,314	3,002,037	153,453,116	180,422,301
94	0	0	774,271	3,077,385	157,304,772	185,564,336
95	0	0	793,707	3,154,630	161,253,109	190,852,920
96	0	0	813,629	3,233,812	165,300,550	196,292,228
97	0	0	834,050	3,314,978	169,449,578	201,886,557
98	0	0	854,986	3,398,186	173,702,750	207,640,323
99	0	0	876,446	3,483,477	178,062,673	213,558,073
100	0	0	898,446	3,570,914	182,532,033	219,644,478
합계	102,838,800		16,020,159	63,673,074	182,532,033	219,644,478

* 기준 : 기대이율3.65%, 농지가격상승률2.85%, 2020년생명표, 위험부담금요율0.5%,
실제대출이율(고정금리 2.0%적용), 배우자승계비동의

(별지 제1호 첨부 서식 2-12)

농지연금지급산출표(변동금리 3.65%, 기간정액형)

(20 년 월 일 기준)

※ 이 예시표는 상담용으로 실제 약정시에는 담보농지가격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신청인		1949년 1월 1일	만 73 세
배우자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농지가격	100,000,000원	월지급금	856,990원
최초지급 (예정)월	년 월	월지급금 지급일	매월 15일
지급방식	☐ 종신행	기간형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년 월 ~ 년 월)

※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배우자승계 동의 여부에 따라 귀하/배우자 연령인
_____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가입자 연령기준으로 산출)

※ 예시표는 가입자 연령 73세, 농지 공시지가 1억원 기준 (세부기준 표 참조)

- ▶ 89세(기대여명)때 농지연금채무액은 169백만원이며 예상농지가격은 161백만원입니다. 채무액 상환 시 현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사는 담보농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며, 채무액보다 경매 낙찰가액이 높으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이외에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세)	월지급금		위험부담금	이자	농지연금 채무액	예상농지가격
	월지급금	년합계액				
73	856,990	10,283,880	28,133	202,597	10,514,610	102,850,000
74	856,990	10,283,880	81,580	587,423	21,467,493	105,781,225
75	856,990	10,283,880	137,255	988,292	32,876,920	108,795,990
76	856,990	10,283,880	195,252	1,405,869	44,761,921	111,896,676
77	856,990	10,283,880	255,666	1,840,852	57,142,319	115,085,731
78	856,990	10,283,880	318,596	2,293,968	70,038,763	118,365,674
79	856,990	10,283,880	384,153	2,765,967	83,472,763	121,739,096
80	856,990	10,283,880	452,439	3,257,643	97,466,725	125,208,660
81	856,990	10,283,880	523,574	3,769,812	112,043,991	128,777,107
82	856,990	10,283,880	597,672	4,303,329	127,228,872	132,447,255
83	0	0	646,719	4,656,483	132,532,074	136,222,001
84	0	0	673,676	4,850,576	138,056,326	140,104,328
85	0	0	701,755	5,052,761	143,810,842	144,097,302
86	0	0	731,010	5,263,371	149,805,223	148,204,075
87	0	0	761,479	5,482,763	156,049,465	152,427,891
88	0	0	793,221	5,711,297	162,553,983	156,772,086
89	0	0	826,284	5,949,359	169,329,626	161,240,090
90	0	0	860,725	6,197,343	176,387,694	165,835,433
91	0	0	896,602	6,455,663	183,739,959	170,561,743
92	0	0	933,975	6,724,749	191,398,683	175,422,752
93	0	0	972,907	7,005,054	199,376,644	180,422,301
94	0	0	1,013,460	7,297,043	207,687,147	185,564,336
95	0	0	1,055,703	7,601,201	216,344,051	190,852,920
96	0	0	1,099,707	7,918,039	225,361,797	196,292,228
97	0	0	1,145,546	8,248,081	234,755,424	201,886,557
98	0	0	1,193,295	8,591,881	244,540,600	207,640,323
99	0	0	1,243,036	8,950,014	254,733,650	213,558,073
100	0	0	1,294,848	9,323,071	265,351,569	219,644,478
합계	102,838,800		19,818,268	142,694,501	265,351,569	219,644,478

* 기준 : 기대이율3.65%, 농지가격상승률2.85%, 2020년생명표, 위험부담금요율0.5%,
실제대출이율(변동금리 기대이율 3.65%적용), 배우자승계비동의

(별지 제1호 첨부 서식 2-13)

농지연금지급산출표(고정금리 2.0%, 경영이양형)

(20 년 월 일 기준)

※ 이 예시표는 상담용으로 실제 약정시에는 담보농지가격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신청인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배우자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농지가격	100,000,000원	월지급금	954,780원
최초지급 (예정)월	년 월	월지급금 지급일	매월 15일
지급방식	☐ 종신행	기간형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년 월 ~ 년 월)

※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배우자승계 동의 여부에 따라 귀하/배우자 연령인 _____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가입자 연령기준으로 산출)

※ 예시표는 가입자 연령 65세, 농지 공시지가 1억원 기준 (세부기준 표 참조)

- ▶ 74세(지급만료)때 농지연금채무액은 127백만원이며 예상농지가격은 132백만원입니다. 채무액 상환 시 현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사는 담보농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며, 채무액보다 경매 낙찰가액이 높으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이외에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세)	월지급금		위험부담금	이자	농지연금 채무액	예상농지가격
	월지급금	년합계액				
65	954,780	11,457,360	0	123,740	11,581,100	102,850,000
66	954,780	11,457,360	0	355,363	23,393,823	105,781,225
67	954,780	11,457,360	0	591,617	35,442,800	108,795,990
68	954,780	11,457,360	0	832,596	47,732,756	111,896,676
69	954,780	11,457,360	0	1,078,396	60,268,512	115,085,731
70	954,780	11,457,360	0	1,329,111	73,054,983	118,365,674
71	954,780	11,457,360	0	1,584,838	86,097,181	121,739,096
72	954,780	11,457,360	0	1,845,683	99,400,224	125,208,660
73	954,780	11,457,360	0	2,111,745	112,969,329	128,777,107
74	954,780	11,457,360	0	2,383,127	126,809,816	132,447,255
합계	114,573,600		0	12,236,216	126,809,816	132,447,255

* 기준 : 기대이율2.85%, 농지가격상승률2.85%, 실제대출이율(고정금리 2.0%), 배우자승계비동의

(별지 제1호 첨부 서식 2-14)

농지연금지급산출표(변동금리 3.65%, 경영이양형)

(20 년 월 일 기준)

※ 이 예시표는 상담용으로 실제 약정시에는 담보농지가격 및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령
신청인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배우자		1957년 1월 1일	만 65 세

농지가격	100,000,000원	월지급금	954,780원
최초지급 (예정)월	년 월	월지급금 지급일	매월 15일
지급방식	☐ 종신행	기간형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년 월 ~ 년 월)

※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배우자승계 동의 여부에 따라 귀하/배우자 연령인
_____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가입자 연령기준으로 산출)

※ 예시표는 가입자 연령 65세, 농지 공시지가 1억원 기준 (세부기준 표 참조)

- ▶ 74세(지급만료)때 농지연금채무액은 138백만원이며 예상농지가격은 132백만원입니다. 채무액 상환 시 현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사는 담보농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며, 채무액보다 경매 낙찰가액이 높으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이외에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세)	월지급금		위험부담금	이자	농지연금 채무액	예상농지가격
	월지급금	년합계액				
65	954,780	11,457,360	0	225,273	11,682,633	102,850,000
66	954,780	11,457,360	0	651,691	23,791,684	105,781,225
67	954,780	11,457,360	0	1,093,672	36,342,716	108,795,990
68	954,780	11,457,360	0	1,551,783	49,351,859	111,896,676
69	954,780	11,457,360	0	2,026,617	62,835,836	115,085,731
70	954,780	11,457,360	0	2,518,783	76,811,979	118,365,674
71	954,780	11,457,360	0	3,028,912	91,298,251	121,739,096
72	954,780	11,457,360	0	3,557,660	106,313,271	125,208,660
73	954,780	11,457,360	0	4,105,710	121,876,341	128,777,107
74	954,780	11,457,360	0	4,673,760	138,007,461	132,447,255
합계	114,573,600		0	23,433,861	138,007,461	132,447,255

* 기준 : 기대이율2.85%, 농지가격상승률2.85%, 실제대출이율(변동금리 기대이율 3.65%적용),
배우자승계비동의

(별지 제2호 서식)

농지연금지원신청서

1. 신청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2. 소유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가 (원/㎡)	농지가격 (면적×지가)	신청 여부	비고
계							

3. 영농경력 및 연금 희망금액

영농경력	신청 금액(월지급금)
()년	원

4. 연금 지원방식 및 대출 이자율 적용

종신형	☐ 정액형		☐ 저소득층 우대 ☐ 장기영농인 우대	☐ 전후후박형
	☐ 수시 인출 형	지급시기		수시인출금 신청액
		☐ 1회차 월지급금지급일		금 백만원(₩)
		☐ 추후 신청 ¹⁾		
기간형	유형	☐ 정액형 ☐ 경영이양형		
	기간	☐ 5년 ☐ 10년 ☐ 15년		
고정금리		☐	변동금리 ☐	

- ※ 우대여부 : 종신통액형 가입에 한해 저소득층 또는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월지급금 우대 지급
- ※ 전후후박(前厚後薄)형 : 월지급금을 최초 지급일부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는 유형
- ※ 수시인출형 : 종신통 농지연금의 총 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일부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 추후 신청¹⁾ : 인출희망 전월말일까지 「농지연금 수시인출금 신청서」(별지제 7호 첨부서식2)에 의거 공사에 신청하여야 함
- ※ 경영이양형 : 연금지급 종료 후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유형

5. 배우자 승계

☐ 승계 ☐ 비승계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농지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성년후견인이 대리하는 경우 별도 서명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영농경력 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2. 경작농지현황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비고
계				

3. 영농경력

영농종사년도	기간	비고
년도 ~ 년도	년	

상기인은 위 표시농지에 대하여 영농사실에 의한 영농경력을 확인합니다.

확인일자 : 20 년 월 일

확 인 자 : 리(통)장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 락 처 :

신청인과의 관계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지연금신청 접수대장

[○○지사]

(㎡, 원)

연 번	접 수 일 자	접 수 자	신 청 인				총 소 유 농 지	영 농 경 력	신청농지						신 청 금 액 (월 지 급금)	지 급 방 식	비 고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농 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자가 (㎡/ 원)	농지 가격 (면적× 자가)			
계																	

※ 지급방식 : ① 종신행(정액, 우대여부 : 저소득층, 장기영농인), ② 종신행(전후후박), ③ 종신행(수시인출), ④ 기간형(정액) (5년), ⑤ 기간형(정액) (10년), ⑥ 기간형(정액) (15년), ⑦ 기간형(경영이양) (5년), ⑧ 기간형(경영이양) (10년), ⑨ 기간형(경영이양) (15년)

(별지 제5호 서식)

농지연금지원 결정서

신청인

배우자

상담일

신청접수일

담 당	부 장	지사장 (지부장)	결 재

I. 인적사항

1.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2.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II. 신청자 자격 및 신청농지 요건확인

1. 신청자격 확인

구분	기준	확인사항	적정여부
연령	만 65세 이상 만 60세 이상	신청인 : 만 세 배우자 : 만 세	☐ 적정 ☐ 부적정
영농경력	5년 이상	()년	☐ 적정 ☐ 부적정
우대여부	저소득층	생계급여대상자	☐ 적정 ☐ 부적정
	장기영농인(30년이상)	()년	

2. 신청농지 요건확인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가 (원/㎡)	농지가격 (면적×지가)	비고		
계	필지				원			
권리사항	지상권 등 제한물권설정	☐ 있음 ☐ 없음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 있음 ☐ 없음			
	채권액 (농지가격기준)	☐ 15%미만 ☐ 15%이상						
시설 및 건축물	시설물 유무	☐ 있음 ☐ 없음		불법건축물 유무	☐ 있음 ☐ 없음			
경영이양형 가입시 담보농지 확인사항				공공임대용농지매입사업 으로 매입가능 여부	☐ 여 ☐ 부			
특이사항								

※ 특이사항 : 농지상태, 개발계획 편입여부, 시설물 유무 등 작성

Ⅲ. 종합의견(기타)

--

※ 신청자 자격 및 신청농지 요건에 하자가 없어 적격자로 선택했다는 사실
등을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농지연금계좌 입금동의서

1.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2. 담보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비고
계				

3. 지급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농지연금 신청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농지연금을 위 신청인(예금주)의 계좌에 입금함을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인(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농지연금 지원 약정서

1. 농지 등의 표시

농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담보농지 지가 ¹⁾ (원/㎡)		농지가격 ²⁾ (원) (면적×지가)
				공시지가	감정평가	
계						

※ 지가¹⁾ :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방법 중 가입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한 가격

※ 농지가격²⁾ : 농지면적에 담보농지 지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월지연금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월지연금은 농지가격에 담보농지 평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위 표시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채권자)를 “갑”이라 하고 농지연금수급자(채무자)를 “을”이라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2. 약정사항

제1조(약정조건) 약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월지연금 지급	다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갑”(채권자)은 매월 연금 방식으로 농지연금을 “을”(채무자)에게 지급한다.(이하 “월지연금”이라 한다) 다만, 제6조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월지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1. “갑”은 다음 조건에 따라 농지연금채권 중 제2조제1호의 월지금금을 지급일에 “을” 명의의 아래 입금계좌에 입금한다.							
	가. 연금내역							
	월지연금	지 급 일	지급형태 및 방식					
	금. (₩) 원)	매 월 (일)	☐ 종신행(정액) - 우대(☐ 저소득 ☐ 장기영농) ☐ 종신행(전후후박) ☐ 종신행(수시인출) ☐ 기간형(정액) (년) ☐ 기간형(경영이양) (년)					
※ 수시인출형의 경우 월지금금은 인출가능총액(총대출 한도범위의 30%이내)을 제외하고 산출 나. 수시인출금 신청내역								
<table border="1"> <tr> <td>수시인출가능총액</td> <td>지급시기</td> <td>수시인출금 신청액</td> </tr> <tr> <td>금 백만원 (₩)</td> <td> ☐ 1회차 월지금금지급일 ☐ 추후 신청¹⁾ </td> <td>금 백만원(₩)</td> </tr> </table>			수시인출가능총액	지급시기	수시인출금 신청액	금 백만원 (₩)	☐ 1회차 월지금금지급일 ☐ 추후 신청 ¹⁾	금 백만원(₩)
수시인출가능총액	지급시기	수시인출금 신청액						
금 백만원 (₩)	☐ 1회차 월지금금지급일 ☐ 추후 신청 ¹⁾	금 백만원(₩)						
※ 수시인출금은 인출가능총액 범위에서 수시인출 가능 (1회차 포함)하며 지급시기는 기금운용에 따라 변동가능								

	※ 추후 신청¹⁾ : 인출희망 전월말일까지 「농지연금 수시인출금 신청서」(별지제7호 첨부서식2)에 의거 공사에 신청하여야 함 ※ 수시인출형의 경우 「농지연금 수시인출금 수령 및 상환 등 동의서」(별지 제7호 첨부서식3)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채권(대출한도액의 100분의 15미만 범위내) 상환 및 말소처리가 가능 다. 입금계좌 : (일반수급계좌)_____ (예금주 : _____)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_____ (예금주 : _____) ※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신청시 월 185만원이내 금액에 한하여 입금되며, 이외 금액은 일반수급계좌로 입금처리 2. 월지급금의 지급일과 지급방식 및 대출이자율 적용 방법은 약정체결일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월지급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약정체결을 무효로 할 수 없다. 3. 지급일이 은행휴무일(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4. 수급자 기준 농지연금 지급한도액은 월3백만원이며, 배우자의 수급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농지연금 채권총액	금. _____ 원(₩ _____) * 농지연금채권총액 : 농지연금가입자 및 배우자 중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100세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월지급금, 위험부담금, 대출이자의 누계액 합계(수시인출형의 경우 수시인출금은 지급월의 월지급금에 포함하고, 경영이양형의 경우 위험부담금을 제외한 약정기간 만료시까지 발생예상액). 단, 배우자 비승계 조건 가입인 경우는 가입자 연령을 기준으로 산출 (농지연금지급산출표 내역과 같음)
③지급기간	시작일 : 20 . . . (최초월지급금지급일) 만료일 : (약정해지시 또는 지급기간만료시까지)
④대출이자율 ¹⁾	☐ 고정금리(2.0%) ☐ 변동금리
⑤농지연금채권의 담보방법	담보방법은 100세까지의 농지연금채권총액(수시인출형의 경우에는 인출가능총액을 1회차 월지급금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함)의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약정체결시 담보농지에 최우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다만, 경영이양형은 담보기간을 약정기간 만료시까지로 함) * 해당 농지에 제한물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채권액¹⁾이 담보농지 가격²⁾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는 담보농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2순위로 할 수 있음 ※ 채권액¹⁾ :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 담보농지 가격²⁾ : 가입(약정체결)당시 농지가격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방식 모두 평가를 100% 적용하며 필지별 적용

⑥월지급금의 배우자 승계	농지연금 지원을 배우자승계조건으로 약정체결한 가입자의 배우자로 지원약정 체결시점부터 계속하여 ‘을’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만 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다. <table border="1" data-bbox="445 338 1186 367"> <tr> <td>배우자 승계 여부</td><td>☐ 승계 ☐ 비승계</td></tr> </table>	배우자 승계 여부	☐ 승계 ☐ 비승계
배우자 승계 여부	☐ 승계 ☐ 비승계		
⑦경영이양형 가입시 담보농지의 매도 및 위약금부과	“을”은 담보농지를 연금약정 이후부터 약정기간 종료 후 공사에 매도할 때까지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담보농지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위약금²⁾을 “갑”에게 납부한다.		

※ 이자율¹⁾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가입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한 이자율

※ 변동금리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자율 인상 시에는 채무액이 증가될 수 있음.

※ 전후후박(前厚後薄)형 : 월지급금을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보다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 종신행 농지연금의 총 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일부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경영이양형 : 연금지급 종료 후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유형

※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위약금²⁾

○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가입(약정)기간과 상관없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미매도시 농지가격*의 2%부과

- 농지가격* : 가입(약정체결)당시 농지가격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방식 모두 평가율 100%적용

○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농지 미매도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단, 불가피한 사유는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담보농지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한 경우로써 공사의 사정으로 담보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제2조(농지연금채무의 범위) “을”이 부담하는 농지연금채무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을”에게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월지급금(수시인출금 포함)의 총액
2. 제3조에 따라 공사의 농지연금채권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위험부담금의 총액. 다만, 경영이양형은 위험부담금을 산정하지 않음
3.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복리로 발생하는 이자의 총액

제3조(위험부담금의 납부) ① 제2조에 따라 “을”이 “갑”에게 납부하는 위험부담금은 제4조에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지급금의 매월 지급일 마다 미리 납부 한다.

② “갑”은 위험부담금을 제1항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농지연금채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을”은 농지연금채권에 가산되어 있는 위험부담금을 약정해지시 일괄 상환해야 한다.

③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전일 영업일에 납부한다.

제4조(위험부담금의 적용 요율 및 계산방법) 제3조제1항의 요율과 계산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율(연0.5%)을 농지연금채권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제5조(위험부담금의 환급) “을”이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위험부담금중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농지연금채권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급한다.

제6조(월지급금의 지급정지 및 약정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월지급금 지급을 정지하고 “을”에게 지급정지 및 약정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약정이 해지된 경우 “갑”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을”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가 없거나 농지연금지원약정체결당시 비승계 조건으로 가입한 경우

나. 승계 조건으로 가입한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승계조건 가입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을”이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담보농지에 공사의 동의 없이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제한물권 등을 설정하거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7. 농지를 훼손 또는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원상복구 촉구 후 기한내 복구되지 않을 시 월지급금을 지급정지하고, 지방자치단체 통보후 처분명령에 따른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약정해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농지의 일부가 제1항제3호, 제5~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지급금은 재산정한다.

③ “갑”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을”에게 농지연금채권액이 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의 85%에 이르렀을 때 채권최고액의 증액설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약정이 해지된 경우 근저당권말소 등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배우자에 대한 농지연금지원) ① “갑”은 “을”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배우자는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당시부터 계속 하여 “을”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승계조건으로 가입한 배우자를 말한다.

③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한 배우자는 농지연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의 배우자가 본인명의의 농지연금에 가입된 경우 승계받은 월지급금을 더한 금액은 농지연금 월 지급한도(1인당 300만원)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농지연금채무의 상환) ① “을”은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농지연금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중도상환시 “을”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회차 월지급금 지급 결정일까지 약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체결일로부터 2회차 월지급금 지급 결정일까지(1일~10일 체결시 익월 10일까지, 11일~31일 체결시 익익월 10일까지)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을”은 위험부담금을 제외한 기 지급된 월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납부일 전일까지 약정이자율 적용)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따른 월지급금 지급정지 및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을” 또는 상속인이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근저당권을 실행하고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⑤ 경영이양형은 연금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을”은 담보농지를 “갑”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무 상환(농지매매대금과 상계)이 가능하다. 만약, “을”이 “갑”의 담보농지 매매계약 체결(약정해지)통지일로부터

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농지연금채무도 전부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해당농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임의경매를 통한 매각)으로 농지연금채권액을 회수한다.

⑥ “을”은 월지급금의 지급정지 및 약정이 해지된 경우 농지연금채무전액을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자계산은 1년을 365일로 하고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하고 만료일은 상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농지연금채권에 대한 대출이자(제1조제4항의 이자율)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해당 대출이자(농지연금 채권액)에 가산한다.

⑦ “갑”이 “을”로부터 받은 연금채권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납정리비용, 위약금, 이자, 위험부담금, 월지급금의 순에 의한다.

⑧ 농지연금채권관련 채무상환 등 세부적인 처리기준은 “갑”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의1(농지연금채무의 분할상환) 제6조제1항제1호내지제2호에 따른 약정해지의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은 “갑”과 농지연금채무에 대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농지연금채권의 행사범위) ① “갑”이 지원한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행사는 담보농지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갑”이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을”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공사법시행령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공사법시행령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3. 공사법시행령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4. “을”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제1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을”은 담보농지에 대하여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농지연금채권 예상총액이상의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로서 “갑”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갑”의 동의를 받아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을”의 통지의무) ① “을”은 약정체결일 이후 주소, 연락처, 성명, 배우자의 사망, 이혼, 담보농지 등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통지의 효력) ① “갑”은 “을”의 주소지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 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이 제11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갑”이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을”에게 도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 월지급금의 지급정지 및 약정해지 통지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갑”이 “을”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제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 담보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비용. 다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2. 담보권의 실행 및 보전(근저당권해지포함) 비용
3. 담보 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 비용
4. 담보농지 가격 산정방법 중 감정평가 방법 선택 시 감정평가 수수료

제14조(위험부담 등)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한 신청서 또는 기타 서류가 천재지변, 수송 도중의 사고 등 “갑”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공사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키로 한다.

② 약정서, 기타 문서의 인영이 신고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위 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손해는 “을”이 부담하겠으며, 증서 또는 기타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5조(회보와 조사 및 협조) ① “을”은 “갑”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 및 거주상황 등에 대하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관련 자료를 회보하거나 현장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담보제공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농지의 처분 및 농지연금채권의 정산시에 상호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16조(약정정보의 제공 및 이용) 본 약정내용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문서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관할 법원의 합의) 본 약정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당해계약목적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 또는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18조(약정사항의 변경) ① “갑”이 본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을”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 알리고 그 밖에는 관할 지사의 게시로써 이를 알리기로 한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을”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갑”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정사항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0조(자금지원실적의 공개), 같은 규정 제43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해지시까지 또는 채권관리기간 동안 “갑”이 지원실적 관련정보를 홍보매체 또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과 약정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계행정기관에의 제공,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등을 위해 농지원부 전산자료, 주민전산정보(이주, 사망 등 확인), 지적전산정보(소유권이전 등 권리변동, 농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사항), 채권회수관련 신용정보조회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데 동의한다.

“을”(채무자와 그 배우자)은 위의 농지연금약정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약정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이 약정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관련된 사업시행지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농지연금사업의 취지 등에 부합하는 해석을 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채권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인)
주 소			

“을” (채무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인)
주 소				

* 성년후견인이 대리하는 경우 별도 서명 날인

(별지 제7호 첨부 서식 1)

한정근담보

(농지연금 담보용)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20 년 월 일

채 권 자 (갑) 한국농어촌공사 (취급지사 지사)
(근저당권자) 135271-0000021
대리인 (인)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채 무 자 (을) 주 소
(근저당권설정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성년후견인이 대리하는 경우 별도 서명 날인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년 월 일 근저당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와 체결한 농지연금지원 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채무자”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끝부분 목록기재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한다)에 순위 제0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피담보 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농지연금 월지급금, 위험부담금 및 이에 따른 대출이자, 위약금(이하
“농지연금채권”이라한다)에 관한 채무,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채권자
가 대납한 가입부대비용(감정평가 보수료 및 법무사 보수료), 제비용
등에 따른 부속 채무
2. 채권최고액 : 금 원(₩)
3. 기 간 : 농지연금채권 상환완료시 까지

제2조(채권최고액의 증액 등) “채권자”는 채권보존을 위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조에 정한 채권최고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를 “채무자”에게 할 수 있으며, 이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곧 이에 동의하며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3조(근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①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현재 근저당 물건에 부합되거나 종속된 모든 부대시설 및 물건은 물론 장래에 추가해서 부합 또는 종속될 물건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② 근저당물건의 실체가 끝부분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않을 수 있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기 전에 근저당권 실행을 당하여도 제2항의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④ “채무자”는 근저당 토지상에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부속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소유자가 제3자 명의인 때를 포함 한다)에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존 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건물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다.

⑤ “채무자”는 농지연금지원약정에 의한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 압류 또는 경매개시, 파산선고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명백히 인정된 때에는 즉시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담보가치의 유지 등) ① “채무자”는 근저당물건에 관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지상권·가등기·임차권 등 각종 설정등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그 현상의 변경 등으로 “채권자”에게 채권보존에 손해를 끼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채무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훼손·공용징수, 공공용지 편입, 기타의 사고 또는 가격의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 제5조(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등) ①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절차에 의거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방법, 시간,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근저당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처분방법 외에는 “채권자”는 채무를 위하여 근저당 물건을 관리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③ “채권자”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근저당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저당물건을 점유·관리하게 한다. 이 경우 저당물건의 점유·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하였을 때에는 곧 갚기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경우 채무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다한다.

- 제6조(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담보농지의 권리현황에 관하여 지체 없이 회보하며, 또한 “채권자”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채무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나 농지의 권리현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여러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채무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추가설정 포함), 변경, 경정, 말소 등에 관한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 ②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이나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처분 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곧 이를 갚기로 한다. 다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는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8조(초과담보 감액 요청) ① “채권자”는 농지연금채권의 일부 상환이 있는 후에 “채무자”의 청구에 따라 미래 예상되는 채권총액 비하여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담보가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의 감액에 동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지대상 담보물의 선택이나 채권최고액의 감액 등은 남아 있는 채권액 담보물의 경중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관할법원의 합의)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당해계약목적물 부동산소재지의 관할법원 또는 “채권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근저당물건 목록>

순위	농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 ²)
0순위				

(별지 제7호 첨부 서식2)

농지연금 수시인출금 신청서

1.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배우자 승계여부		여 ☐ 부 ☐		

2. 담보농지

농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²)
계			

3. 수시인출금 신청내역

(금액 : 백만원)

수시인출 가능총액 (A)	수시인출금 수령액 (B)	금회 신청액 (C)	추후 수시인출가능액 (D=A-B-C)

위와 같이 (배우자 승계조건으로 가입한 경우 배우자 동의를 받아) 농지연금 수시인출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성년후견인이 대리하는 경우 별도 서명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첨부 서식3)

농지연금 수시인출금 수령 및 상환 등 동의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지급하는 농지연금(수시인출형) 신청자로서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1. 담보농지

농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 ²)	소유권이외권리등	채권자
계					

2. 본인은 상기 담보농지의 선순위채권 상환을 위해 아래 금액을 채권자에 입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이때 채권자에게 입금한 금액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

(단위:원)

채 권 자	상환(변제 예정)일	채무액	상환(입금)요 청 액	상환(입금)계좌
				(은행)
계				

※ 선순위채권 상환은 그 채권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로서 상환(입금)일은 농지연금 지원약정서에 따른 수시인출금 지급일로 함

3. 공사가 위 “2”의 금액으로 선순위채권 상환시 상환부족액에 대하여는 본인이 상환실행 5일전까지 공사에 입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담보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및 선순위채권 말소비용 등 제비용을 상환실행 전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 1. 채권자 확인서(채권내역 및 입금통장 계좌번호 포함) 1부
2.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제한 사항 1부

신 청 일 : 년 월 일
신청인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1호 서식)

농지연금 수시인출금 심사서

(20 년 월 일)

담 당	부 장	지사장 (지부장)	결
			재

1.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배우자 승계여부		여 ☐ 부 ☐		

2. 담보농지

농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m ²)	농지가격 ¹⁾ (원)	채권최고액 ²⁾ (원)
계					

* 농지가격¹⁾과 채권최고액²⁾란은 선순위채권 상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3. 근저당권 설정내용

설정 순위	()순위	농지연금채권액(A)	원
채권최고액(B)	원	채권최고액 도달비율(A/B)	%

4. 채권 현황

(금액 : 원)

월지급금 (A)	위험부담금 (B)	이자 (C)	농지연금채권액 (A+B+C)

* 농지연금채권액은 월지급금이 기지급된 회차까지의 A, B, C의 합계

5. 수시인출금 내역

(금액 : 백만원)

수시인출 가능총액	수시인출금 기 지급액	금회 신청내역		금회 승인내역	
		신청일자	신청액	지급일자	지급액

* 수시인출금을 선순위채권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수시인출금 수령 및 상환 등 동의서」(별지 제7-2호서식)를 제출받아 지급요건 확인

6. 심사의견

--

※ 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농지연금 약정변경 신청서

1. 인적사항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2. 담보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계			

3. 채권현황

(금액 : 원)

약정 체결일	월지급금 지급기간	월지급금 (A)	가입비 (B)	위험부담금 (C)	이자 (D)	농지연금채권액 (A+B+C+D)

* 농지연금채권액은 월지급금이 기지급된 회차까지의 A, B, C, D의 합계

4. 약정변경 신청사유(근거서류 별첨)

조건변경 신청사유	해당사유 기재
--------------	---------

*신청사유 : ①채무인수 및 연금승계신청 ②수용(편입)·전용 등 ③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증액 ④담보물권 설정동의 요청 ⑤입금계좌변경(일반계좌)
⑤입금계좌변경(압류방지계좌) ⑥가입비 납부 ⑦지급방식 변경 ⑧
제도개선에 따른 약정변경 등

위와 같이 농지연금 약정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농지연금 약정변경 심사서

(20 년 월 일)

담 당	부 장	지사장 (지부장)	결
			재

1. 인적사항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2. 담보농지

농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계			

3. 근저당권 설정내용

설정 순위	()순위	농지연금채권액(A)	원
채권최고액(B)	원	채권최고액 도달 비율(A/B)	%

4. 약정 변경내역

0 변경사유

0 변경 전

0 변경 후

5. 채권현황(당초/변경)

(금액 : 원)

구분	약정일/ 변경일	월지급금 (A)	가입비 (B)	위험부담금 (C)	이자 (D)	농지연금채권액 (A+B+C+D)
당초						
변경						

* 농지연금채권액은 월지급금이 기지급된 회차까지의 A, B, C, D의 합계

6. 심사의견

* 필요 시 현지확인 및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농지연금 채무액(상환) 확인서

□ 농지연금수급자 :

□ 생 년 월 일 :

□ 담보농지 및 상환내역

(금액 : 원)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채무액	상환액	상환일	채무 잔액
계							

상기 담보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0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농지연금을 지급받은 농지로서 동 농지연금채무액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인

(별지 제11호 서식)

농지연금 약정변경 통지서

귀하

귀하께서 신청하신 농지연금약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당초 약정현황

농지연금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담보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약정체결일	월지급금 (A)	가입비 (B)	위험부담금 (C)	이자 (D)
	원	원	원	원
	농지연금채무액 (A+B+C+D)			
	원			

* 농지연금채권액은 월지급금이 기지급된 회차까지의 A, B, C, D의 합계

2. 약정변경 결과

구분	신청내용	변경내용

(금액 : 원)

변경일	월지급금 (A)	가입비 (B)	위험부담금 (C)	이자 (D)	농지연금채무액 (A+B+C+D)

20 . .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인

(별지 제11-1호 서식)

농지연금 수시인출금 지급 통지서

귀하

귀하께서 신청하신 농지연금 수시인출금이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배우자 승계여부		여 ☐ 부 ☐		

2. 담보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계			

3. 채권현황

(금액 : 원)

월지급금 (A)	위험부담금 (B)	이자 (C)	농지연금채권액 (A+B+C)

* 농지연금채권액은 월지급금이 기지급된 회차까지의 A, B, C의 합계

4. 수시인출금 지급내역

(금액 : 백만원)

수시인출 가능총액	수시인출금 기 지급액	금회 신청액	금회 지급일자	금회 지급액

20 . .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인

(별지 제12호 서식)

(기준일 : 년 월 일)

농지연금 사후관리 조사표

1. 인적사항 등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변동여부 및 사유		수급자(배우자) 사망(일자),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 기록		

*변동사유 : ①수급자사망 ②배우자사망 ③이혼·재혼 ④주소·연락처변경 ⑤기타

지원약정일		지 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월지급금(원)		월지급금지급누계(원)	

2. 담보농지

농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농지변동 여부 및 사유
계				

*농지변동사유 : ①소유권상실(변동) ②제한물권 설정 ③공공용지편입 ④농지
전용(공작물설치)등 ⑤농지훼손 ⑥기타

3. 조사자 의견

--

조 사 일 : 년 월 일

확 인 자 :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조 사 자 :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

농지연금약정 해지현황

1. 총괄

(단위 : 명, 백만원)

부서	사후관리대상		약정해지 (A+B)		회수완료 (A)		회수중 (B)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 금액 : 전년도 12월말 기준 농지연금 채권액

2. 약정해지 내역

(단위 : 백만원)

성명	생년 월일	주소	1) 해지사유	2) 조치현황	3)농지연금채권액					회수액		미회 수액 (A-B)	회 수 예 정 일
					합계 (A)	월지 급금	가입 비	위험 부담 금	이자	일자	금액 (B)		
계													

*1)해지사유 : ①연금수급자사망 ②배우자(채무인수자)사망 ③소유권상실(변동)
④근저당채권최고액 증액거절 ⑤제한물권설정 ⑥농지전용 등
⑦연금지급기간 만료(경영이양형) ⑧ 기타

*2)조치현황 : ①회수완료 ②회수중

*3)농지연금채권액 : 월지급금이 기지급된 회차까지의 월지급금, 가입비, 위험부담금,
이자의 합계

농지연금 약정 (해지철회취소) 신청서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가 (원/㎡)	농지가격(원) (면적×지가)	비고
계						

약정 체결일	최초 지급월	월지급금	지급형태 및 방식	농지연금* 채무총액
20 . .	20 .		☐ 종신행(정액) - (우대 : ☐ 저소득 ☐ 장애인) ☐ 종신행(전후후박) ☐ 종신행(수시인출) ☐ 기간형(정액) (년) ☐ 기간형(경역) (년)	

--

- 115 -

(별지 제15호 서식)

농지연금약정해지 통지서

_____ 귀하

님은 우리 공사와 00년 00월 00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하고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농지연금지원약정서 제6조제1항제0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00년 00월 00일부로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지원약정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에 따른 농지연금채무를 우리공사에 00년 00월 0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일까지 농지연금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수속을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약정해지 대상

농지연금수급자		약정체결일	
연금지급기간	~	연금채무액 (년 월 일 기준)	원

* 연금채무액은 년 월 일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납부고지 및 채무액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담보농지 내역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3. 약정해지 내용

지급정지조치일	사유발생일	약정해지사유

* 약정해지사유 : ①소유권상실(변동) ②근저당채권최고액 증액거절 ③제한물권 설정
④농지전용 등 ⑤기타

20 . .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인

[연락처 : (담당자 :)]

농지연금약정해지 통지서

_____ 귀하

님은 우리 공사와 00년 00월 00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하고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농지연금지원약정서 제6조제1항제0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00년 00월 00일부로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지원약정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에 따른 농지연금채무를 우리공사에 00년 00월 0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일까지 농지연금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수속을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000 님의 상속인이 농지연금채무의 분할상환을 원하시면, 공사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원하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약정해지 대상

농지연금수급자		약정체결일	
연금지급기간	~	연금채무액 (년 월 일 기준)	원

* 연금채무액은 년 월 일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납부고지 및 채무액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담보농지 내역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3. 약정해지 내용

지급정지조치일	사유발생일	약정해지사유

* 약정해지사유 : ①농지연금수급자사망 ②배우자(채무인수자)사망

20 . .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인

[연락처 : (담당자 :)]

농지연금약정해지 통지서

_____ 귀하

님은 우리 공사와 00년 00월 00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하고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농지연금지원약정서 제1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00년 00월 00일부로 농지연금 지급이 종료되고 지원약정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공사와 00년 00월 00일까지 담보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농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일까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지연금채무를 정산할 수 없거나 농지연금채무전부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수속을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약정해지 대상

농지연금수급자		약정체결일	
연금지급기간	~	연금채무액 (년 월 일 기준)	원

* 연금채무액은 년 월 일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담보농지 매매계약 및 채무액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담보농지 내역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20 . .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인

[연락처 : (담당자 :)]

농지연금 승계 안내서

_____ 귀하

_____님은 우리 공사와 00년 00월 00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하고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농지연금수급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다만, 농지연금 가입시 연금승계에 동의하신 배우자께서 농지연금을 계속받기를 원하신다면 00년 00월 00일까지 담보농지 소유권이전과 농지연금 채무인수(근저당권 채무자 명의변경)를 완료하시고 농지연금약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한내에 담보농지 소유권이전 및 농지연금 채무인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원약정이 해지되므로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농지연금 약정내역

연금수급자		약정체결일	
연금지급기간	~	연금채무액 (년 월 일 기준)	원
월지급금	원	지급계좌	

2. 소유권이전대상 담보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20 . .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인

[연락처 : (담당자 :)]

농지연금 승계 안내서

_____ 귀하

_____님은 우리 공사와 00년 00월 00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하고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농지연금수급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다만, 농지연금 가입시 연금승계에 동의하신 배우자께서 농지연금을 계속받기를 원하신다면 00년 00월 00일까지 담보농지 소유권이전과 농지연금 채무인수(근저당권 채무자 명의변경)를 완료하시고 농지연금약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담보농지 소유권이전 및 농지연금 채무인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원약정이 해지되므로 담보농지를 우리 공사와 매매계약 체결하거나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농지연금 약정내역

연금수급자		약정체결일	
연금지급기간	~	연금채무액 (년 월 일 기준)	원
월지급금	원	지급계좌	

2. 소유권이전대상 담보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 해당 담보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단,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채권회수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20 . .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인

[연락처 : (담당자 :)]

근저당권 추가설정(증액) 요청서

_____ 귀하

귀하께서는 00년 00월 00일 현재 농지연금채무액이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의 85%에 도달되어 농지연금지원약정서 제6조제3항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증액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00년 00월 00일까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변경(증액)설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기일까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증액설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서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득이 농지연금지급정지 및 지원약정이 해지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지연금 약정내용

연금수급자		약정체결일	
연금지급기간	~	연금채무액 (년 월 일 기준)	원
담보설정 채권최고액	현재설정액	원	추가증액 요청액 원

2. 담보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3.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인

[연락처 : (담당자 :)]

(별지 제18호 서식)

지원약정 및 담보해지서

(20 년 월 일)

담 당	부 장	지사장 (지부장)	결
			재

1. 약정내용

농지연금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전자우편 :	
담보농지	농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 ²)
약정채결일	월지급금 (A)	가입비 (B)	위험부담금 (C)	이자 (D)	농지연금채권액 (A+B+C+D)
	원	원	원	원	원

2. 해지내역

농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 ²)	비고
계				

근저당권 설정내역	연 번	설정일자	설정순위	설정금액
해지사유				

3. 검토의견

--

(별지 제19호 서식)

저당권 실행 착수통지서

_____ 귀하

님께서 수령한 농지연금 채무에 대하여 00년 00월 00일까지
납부토록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_____년
____월 ____일부로 저당권실행(임의경매)에 착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본 저당권실행에 관하여 귀하께서 채무변제의사가 있으시면 지체없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연금채무액 : 금 _____ 원(₩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 :

저당권 실행 착수통지서

_____ 귀하

님께서 수령한 농지연금 채무에 대하여 00년 00월 00일까지 담보농지를 우리공사와 매매계약 체결하거나 농지연금채무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담보농지의 매매계약 체결 또는 농지연금채무액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_____년 ____월 ____일부로 저당권실행(임의경매)에 착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본 저당권실행에 관하여 귀하께서 담보농지를 우리공사와 매매계약 체결의사 또는 채무변제의사가 있으시면 지체없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연금채무액 : 금 _____ 원(₩) _____)

년 월 일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 :

(별지 제20호 서식)

농지연금사업 정산서

1. 총 괄

가. 수 입

(단위 : 원)

과 목	예 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이익금(C)	계(D)		
계						
○ 농지관리기금						
○ 이익금 - 예치이자 -						

나. 지 출

(단위 : 원)

과 목	예 산(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 (A-B)	비 고
		사업비(B)	손실금(C)	계(D)		
계						
○ 농지연금						
○ 손실금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 미수채권						

2. 세부내역별

가. 사업비

(단위 : 건, m², 원)

도별 (지사별)	예산 (A)	정 산 신 청 액			미집행액(A-B)
		건수	면적	금액(B)	
계					

나. 이익금

(단위 : 원)

구분	도별 (지사별)	이익금(A)	정산액(B)	잔액(A-B)
	계			
예치이자				

다. 손실금

(단위 : 원)

구분	도별 (지사별)	손실금(A)	정산액(B)	잔액(A-B)
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미수채권				

(별지 제21호 서식)

농지연금 지원 실적(/4 분기)

1. 총 괄

(단위 : 건, ha, 백만원)

구 분	계 획				지원실적 (금분기까지)			실적율(%)			
	년 간		금분기까지		건 수 (E)	면 적	사 업 비 (F)	건 수		사업비	
	건 수 (A)	사 업 비 (B)	건 수 (C)	사 업 비 (D)				E/A	E/C	F/B	F/D
계											

2. 도(지사)별 지원실적

(단위 : 건, ha, 백만원)

구 분	계 획				지원실적 (금분기까지)			실적율(%)			
	년 간		금분기까지		건 수 (E)	면 적	사 업 비 (F)	건 수		사업비	
	건 수 (A)	사 업 비 (B)	건 수 (C)	사 업 비 (D)				E/A	E/C	F/B	F/D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별지 제22호 서식)

농지연금사업 현지조사서

1.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2. 담보농지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2)	농지 이용 여부	자경 여부	농업 진흥 지역 여부	건축 물 유무	경지 정리 여부	도로 연접 여부
시·군	읍·면	리·동									
소 계											

※ 도로연접여부는 지적도 기준

3. 기타사항

※ 건축물 종류 등을 기재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부장	성명	(인)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1호 서식)

농지연금사업 현지조사서(경영이양형)

1.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2. 담보농지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실제 지목	면적 (㎡)	지적도대비 필지경계 (포락여부 등)	재배 작물	농지 이용 여부	자경 여부	도시 지역 여부	지장물 유무	경지 정리 여부	도로 연접 여부
시·군	읍·면	리·동													
소 계															

※ 도로연접여부는 지적도 기준

3. 신청자 현황

구분	농업인 여부	농지 경영규모(㎡)			
		자경	임대	임차	계
신청인					
배우자					

4. 기타사항(사진 및 의견 등)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담당자와 협조하여 현지조사 실시

※ 담보농지 매입 부적정 사유 등을 기재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부장 성명 (인)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호 서식)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농지연금사업」 담보농지 제공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귀 공사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에 동의
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며, 감정평가
가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정평가비용은 본인이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 ○ ○ (인)

한국농어촌공사 ○○ 지사장 귀하

(별지 제23-1호 서식)

감정평가에 관한 이행각서	
1. 계약(과업) 내용	농지연금사업 대상농지 감정평가
2. 감정평가보수액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하한수수료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가 지급 (하한가 0.8 조건)
3. 납 품 기 한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
4. 납 품 장 소	한국농어촌공사
5. 지 체 상 금 율	지체 1일에 대하여 계약(평가보수액)금액의 1,000분의 20
6. 과 업 내 용	농지연금사업의 감정평가 관련 의뢰내용에 의함.
7. 기타 ◦ 계약보증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6항4호에 의거 납부면제 ◦ 농지소유자의 사업 지원 불능포기 등으로 사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가의뢰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법인등은 평가보수액을 요구하지 않음. ◦ 감정평가보수액은 농지소유자가 부담하며, 공사는 보수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처리기한내 대상물건의 특수성, 물건의 과다,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기한내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평가액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재평가 요청시 성실 보완, 부실허위 평가시 손해배상 책임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함.	
위 감정평가를 이행함에 있어 위의 조건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고, 본인이 제출한 내역서 등 모든 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인정하며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감정평가서 검토표

년 월 일

검토자 : ○ ○ ○

감정평가서	건명(농업인)		평가기관	
	평 가 가 격		작성일자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감정평가목적이 보상·담보 등 특수평가 목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는지 여부	
2. 지목, 면적의 지적공부와 실제현황과의 일치 여부	
3. 실제현황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	
4. 평가액 산출근거 구체적 명시 여부	
5. 과수원의 경우 과수목 제외 여부	
6. 국가기간시설 등 지장물이 있을 경우 지장물을 감안하여 평가했는지 여부	

평 가 물 건	단가(원/㎡)			가격(천원)		비율 (B/A)
	거래 시세	공시 지가	평가 가격	공시지가 (A)	평가가격 (B)	
계	-	-	-	-		-

※ 거래시세는 현지조사 가격

감정평가서 검토의견

(별지 제25호 서식)

0담보농지가격결정 심의조서

1. 주문

농지연금사업 담보농지에 대하여 담보농지 예정가격 결정의 적정여부를 다음과 같이 심의한다.

2. 제안사유

농지연금사업 담보농지에 대하여 담보농지 예정가격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쳐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심의내용

<담보농지가격 결정>

연번	필지주소	지목	면적	농 지 가 격					비고
				희망 가격	감정평가 가격	인근 실거래가격	공시지가	예정 가격	
1				()	()	()	()	()	
2				()	()	()	()	()	
3				()	()	()	()	()	
계	필지			()	()	()	()	()	

* 1. ()내서에는 ㎡당 단가를 기재

2. 심의대상 필지가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4. 심의결과

○ 원안대로 의결

* 수정 의결할 경우에는 수정내용 기재

년 월 일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입회자	(인)

(별지 제26호 서식)

분할상환약정서

1. 담보농지별 총 상환액

(단위 : 원)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채무액
계			

2. 상환약정내용

(단위 : 원)

납 부 약정일	할 부 금			할부원금 잔 액	비 고
	할부원금	할부이자	계		
					1회차 상환은 할부 원금잔액의 50%이상
총 계					

본 약정은 농지연금 지원약정서 제8조의1(농지연금채무의 분할상환)을 근거 한 것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를 “갑”이라 하고, 농지연금 수급사망자 ○○○의 상속인 ○○○을 “을”이라 하여 위와 같이 농지연금채무(금액)에 대한 상환약정을 체결한다.

* 납부약정일내 할부금 미상환시 근저당권 실행

20 년 월 일

“갑” (채권자) 한국농어촌공사 ○ ○ 지사장 (인)

“을” (상속인) 주 소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 요청서

농지연금 가입에 따라 청구된 감정평가 보수료 _____원을
귀 공사에서 대납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납된 감정평가
보수료는 최초 농지연금 월지급금 수령시 차감되며, 최초
월지급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차 월지급금에서
그 부족분을 차감하여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약정해지
및 철회시 대납 감정평가 보수료가 차감 월지급금 총액보다 클 경우
지급된 감정평가 보수료 전액과 이자 및 위험부담금을 채무액으로
회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법무사 보수료 대납 요청서

농지연금 가입에 따라 청구된 법무사 보수료 _____ 원을
귀 공사에서 대납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납된 법무사 보수료는
최초 농지연금 월지급금 수령시 차감되며, 최초 월지급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차 월지급금에서 그 부족분을
차감하여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약정해지 및 철회시
대납 법무사보수료가 차감 월지급금 총액보다 클 경우 지급
된 법무사보수료 전액과 이자 및 위험부담금을 채무액으로
회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8호 서식)

농지연금 채권관리현황(월)

1. 부서명 : ○○지역본부
2. 세부내역

(단위 : 원)

항 목	전월 잔액	당월		당월 잔액	비고
		증가액	감소액		
계					
월지급금					
가입비					
위험부담금					
이 자					

- ### 3. 채권변동 관련 특이사항

--

(별지 제29호 서식)

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 만료 통지서

귀하

귀하께서 수령 중인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이 만료되어 만료일 이후부터는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약정내용

농지연금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배우자					
담보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약정채결일	월지급금 (A)	가입비 (B)	위험부담금 (C)	이자 (D)	농지연금채무액 (A+B+C+D)	
	원	원	원	원	원	

* 농지연금채무액은 월지급금이 기지급된 회차까지의 A, B, C, D의 합계

2. 최종지급일 :

3. 월지급금 지급 만료일 :

4. 채무상환 : 월지급금 지급이 만료되어도 채무상환 의무는 사망 등 약정해지시에 발생합니다.

(단, 경영이양형은 연금지급기간 종료로 채무상환 의무가 발생되며 담보농지를 우리 공사에 매도함으로써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연금채무액은 최종지급일까지 계산된 것이며, 지급 만료일까지의 월지급금과 회수시까지의 위험부담금과 이자가 가산됩니다

※ 농지연금채무 상환은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 또는 지급만료시 언제든지 상환 가능합니다.

20 . . .

한국농어촌공사 이사장 인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귀하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필요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조회·수집·이용·제공의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귀하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귀하에 대한 사업지원 적정성 판단과 계약체결, 계약체결 후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조회·수집·이용·제공 됩니다. ■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 판단 ■ 계약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사후관리, 채권관리, 법정쟁송, 분쟁해결,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조회·수집·이용·제공할 항목	조회·수집·이용·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적,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직업, 주소, 이메일, 소유 농지정보, 계좌번호, 가족 성명(필요시), 가족 주민등록번호(필요시), 가족전화번호(필요시), 가족 핸드폰(필요시), 가족 이메일(필요시) ■ 지원 적정성 판단 등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 농업인 및 농지에 관한 정보(농지원부, 농업경영체증명서, 토지(건물)대장,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 소득 및 부채에 관한 정보(소득금액증명, 국세·지방세납세

	증명서, 금융부채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에 관한 정보 ▶ 출처 :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대법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은행연합회, 한국고용정보원, 설문조사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u>지방자치단체</u> ■ 개인 신용정보 동의서에 의하여 조회한 개인(신용)정보 ▶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정보 ※ 고유식별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를 의미합니다.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업)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사업)거래 종료일 후에는 채권관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사업)거래 종료일이란 한국농어촌공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농지규모화사업, 과원규모화사업, 개인회생사업, 임대수탁사업, 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전업농 등록 관리, 2030세대 선정 등) 해지 및 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여부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여부	- 수집목적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귀하에 대한 사업 지원 적정성 판단과 계약체결, 계약체결 후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조회·수집·이용·제공 됩니다. -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 수집 및 이용기간 : 고유식별번호는 (사업)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사업)거래 종료일 후에는 채권관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거부시 불이익내용 : 고유식별번호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조회·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기타 안내 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한국농어촌공사의 맞춤형농정지원, 농정안내서비스 및 용자·보조금 등에 관한 안내 정보 등을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선택사항)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조회대상 기관)	귀하의 개인정보는 계약체결을 위한 신청자격 확인 및 계약체결 후 사후관리, 채권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대법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은행연합회, 한국고용정보원, 설문조사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u>지방자치단체</u>
제공받는 자의 목적 (제공·조회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귀하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귀하의 사업지원 적정성 판단과 계약체결, 계약체결 후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조회 됩니다. ■ 신용조회에 대한 제공 ▶ 신용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사업)계약관계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판단 자료 제공 ▶ 신청자격 확인 및 계약 후 사후관리 위반사항 여부확인, 채권관리, 설문 등을 위한 업무의 수행
제공·조회할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번호, 국적, 직업, 주소, 연락처 등 ▶ 지원적정성판단정보 : 농업인 등록, 경작기간, 농지정보 등 ▶ 개인 신용 능력 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개인신용도판단 정보 : 연체 등 정보, 채무보증정보 등 ▶ 개인 신용 거래 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 당좌예금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사업)거래 종료일 후에는 채권관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사업)거래 종료일이란 한국농어촌공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농지규모화사업, 과원규모화사업, 개인회생사업, 임대수탁사업, 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 등) 해지 및 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동의하지 않을시 계약체결을 위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연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별지 제31호 서식)

1. 약정내용

2. 약정해지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법정상속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

- 145 -